

인권 선언문의 전문을 제시하고 그것의 의의와 해설을 덧붙였다. 좀 더 상세하게 각 글의 내용을 흘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글의 제목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실상과 그 해결책」으로써 국경지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이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를 실례를 들어 보여 준다. 이 글은 크게 두가지로 이주민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첫번째가 국경지대에서 정부관리들이 저지르는 인권침해 문제이고, 둘째는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이주민 여성에 대한 학대 문제이다. 그리고 필자는 다각적인 면에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그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한 NGO의 역할을 명확히 보여 준다.

두 번째 글은 인권 위원회(제54회)의 회의 내용을 사실감 있게 보여주는 글로써 제목은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보장과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다.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관한 정부간 노동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의제한 조항들을 생생히 보여 준다. 또한 회의의 순서를 그대로 다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회의의 양식을 사실 그대로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 모음, 지역발전, 이주자 규정, 학대가 그 주요 의제이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조약」 전문을 그대로 번역해 놓았다. 제1부에서는 적용 범위와 정의, 제2부는 차별 없는 권리 보장, 제3부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인권, 제4부는 정규로 등록된 혹은 정규인 법적 지위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인정되는 추가적인 권리, 제5부는 특별 형태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한 규정, 제6부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 이주에 관한 전전하고 공정한 그리고 인도적인 동시에 합법적인 조건의 정비, 제7부는 조약의 적용, 그리고 제8부 최종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세계 이주민 인권 조약의 중요성과 그 본질적 내용」을 다룬다. 이것은 조약에 대한 해설적 안내서 성격이 강하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서론에서는 이 협정(the Convention)의

중요성과 대략적 내용 소개가 이루어 지고 본론에 와서는 내용이 4가지 부분으로 나눠 진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주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가 이루어지고, 둘째 부분에서는 국제적 인권 기준들이 무엇이며 그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가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그리고 셋째 부분에서는 1990년 규약의 내용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이 규약의 비준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글을 제시하면서 글을 맺는다.

아무쪼록 이 4가지 글이 현존하는 이주민 인권 실태를 인식하고 앞으로 이주민 노동자들의 인권 운동의 나가야 할 방향성을 잡는데 조그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번역; 조수경

1.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실상과 그 해결책

지구촌 경제구조 개편, 더해 가는 기아, 폭력과 분쟁 등으로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런데 이들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간 국가로부터 심한 모욕과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는다. 본 글은 전세계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 두 가지를 논의할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국경지대에서 정부관리들이 저지르는 인권침해 문제이고, 둘째는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이주민 여성에 대한 학대 문제이다.

I. 전세계 이주민 노동자들이 당하는 인권침해 문제들

A. 국경 경비대의 위법행위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 국경을 넘으려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당하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 이것과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HRA이 내놓은 수년간에 걸쳐 일어난 위법행위들에 관한 보고서를 정리해 보여 준다. 멕시코와 미국간 이동자가 너무 많아 여기서는 특별히 두 나라간에 이천 마일에 걸쳐 발생하는 국경문제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멕시코-미국간의 문제이지만 이러한 유형의 예들은 전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국경 경비대의 권한 악용

정책을 입안하는 연방국 INS(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는 국경 경비대들이 자기 자신과 다른 경비대 그리고 무고한 제 삼자를 방어하기 위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에게 발포하는 것은 허가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국경보호를 목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러나 모든 정부가 이행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그 선이 무시되고, 경비대들의 부당한 행위들은 갈수록 증가하지만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있더라도 가볍게 끝난다.

1994년, 국경 경비대원이 22살의 브란스빌 거주자 한 명을 불법 이주자로 오인하여 그의 다리에 총을 쐈다. 후에 그 청년은 단지 사냥을 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비슷한 사건으로 70세 노인과 같이 토끼사냥을 나간 18살의 염소치기가 국경 경비대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마린이라는 사람이 쏜 22구경 총에 맞아 죽었다. 정부관리들이 그 소년을 치료받게 한 때는 이미 사십 분이 지나서였다. 이와 비슷한 예로 1997년 6월에 중국인이 틀림없어 보이는 사람 한 명과 서유럽에 가길 원하던 41명의 중국인 이주자들 중 한 명이 리투아니아 경비대 총에 맞고 죽었다.

2. 국경 경비대의 위법행위를 촉진시키는 정책들

증가하는 불법입국자들을 막기 위해 국경을 감시하는데 더 많은 정부요원들을 파견하는 국가들이 많아졌다. 갑작스레 많은 인원을 국경경비로 보내게 됨에 따라 대다수가 이전보다 훈련도 덜 받고 엄격한 심사도 거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요원들이 불법 이주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더 심해졌고 그 결과 사망자도 더 증가했다. 국경을 따라 숙련되지 못한 요원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므로 그에 따른 문제들도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다.

미 연방국은 1993년에서 1997년 사이에 국경 경비대의 수를 두 배로 늘렸다. 1997년 클링턴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 검문소에 경비대원 천명과 감시관 348명을 더 보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INS 예산은 지난 5년간에 걸쳐 두 배가 넘게 늘었다. 종합회계사무소에 따르면 INS 예산은 1993년 15억불에서 31억불로 뛰어올랐다고 한다.

멕시코도 중미와 남미 인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멕시코와 과테말라 경계 지대에 군병력을 증가시켰다. 병력이 늘어나자 국경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사건도 늘어났다. 1997년 한 과테말라 사람이 멕시코에 사는 형제를 방문하였다 멕시코 이민국관리에게 총대로 맞고 옷과 돈을 빼앗겼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가려했던 살바도라 시민 한 명이 미국과 멕시코 경계에 있는 Ciudad Juarez에서 3일간 감금당했는데 3일동안 단 한번만 식사를 하고 병어리가 되기 직전에 가까스로 과테말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남아프리카당국은 국경순찰을 강화하여 근접 지역 국민의 불법 이주를 막을 계

획이다. 남아프리카는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을 벗어나자 불법으로 입국하는 아프리카 인들로 넘쳐나게 되었다. 1997년까지 남아공에서 모잠비크, 짐바브웨, 에티오피아로 돌려보낸 불법입국자가 18만 명을 웃돈다.

태국과 미얀마 사이에 사는 Shan사람들은 한 철의 임시 노동력으로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었지만 이제는 미얀마 피난민들과 같이 강제철거 당하고 있다. 태국의 관계당국자들은 이 국경거주자들과 이주자들 중 일부에게 떠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미얀마 정부가 피난민 캠프를 공격하기 직전에 태국 관계당국자들이 사라져서 Shan지역은 무방비 상태로 남아 있다.

3. 환경재해로 인한 사망

국경경비가 강화됨에 따라 이주자들은 입국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위험한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환경재해로 인한 사망으로도 알려진 이러한 형태의 사망자는 한번에 한두 명으로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갈수록 더 위험한 이주방법이 전세계적으로 늘어가는 게 현실이다.

1996년 8월에 더글拉斯 근처 아리조나에서 한 집단의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으로 흐르는 지하수 파이프를 통해 미국으로 넘어가려 하였다. 그러나 폭우줄기가 관으로 흐르는 바람에 남자 5명과 여자 1명이 죽었다. 같은 해에 19명의 이주자가 일사병과 합병증으로 죽었는데 이들은 텍사스 케네디 컨트리에 있는 국경검문소를 피해가려다 변을 당했다. 남부 텍사스 폴리아스 근처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 데 멕시코 여성 4명이 열사병과 탈수증으로 죽었다. 2주 후에 다섯 번째 시체가 발견됐다. 그런데 이 다섯 구의 시체는 국경검문소에서 15마일 떨어져 있었다.

최근에 휴스턴 대학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고 하다가 또는 이천 마일이 되는 미국-멕시코 국경 검문소를 피해 달아나려고 하다가 죽은 이가 1994년에서 1997년 사이에 1185명에 이른다고 한다.

환경재해로 인한 사망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아공에선 모잠비크인이 남아공으로 불법 이주하려다 사자의 먹이가 되었다. 실제로 1997년 남아공으로 이주하려 여자 한 명과 그녀의 2살의 아들을 포함한 11명의 사람이 맹수들의 먹이가 되었다. 그리고 림포포강을 헤엄쳐 이주하려던 모잠비크 인들이 악어 밥이 되었다는 보고서도 있다.

1997년 비슷한 사건으로 75마일 되는 리투아니아 경계를 순찰하던 폴란드 경비대는 눈으로 뒤덮힌 덤불 속에 모여있는 아프가니스탄 가족을 체포했다. 같은 날 다

른 경비대원들도 서유럽으로 가려던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인 41명이 숨어든 길로 우연히 들어서게 되어 그들을 체포하였다. 여전히 수천 명되는 쿠르드인, 불가리아인, 터키인, 모슬램족, 로마집시들이 독일로 건너갈 기회를 기다리며 니스강 근처 쓰레기장에서 머물고 있다.

4. 국경 경비대가 지지르는 물리적 가학과 폭행

국경을 건너려는 이주자들은 우연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인간이하로 잔혹하게 취급받는다. 구타 등 그 외 다른 물리적 잔혹함은 특별한 게 아니다. 이러한 종류의 가학 행위는 특정 집단을 목표로 하나 자국민이나 비자국민이나 다치기는 마찬가지다.

1996년 1월 텍사스 국경에서 미국시민으로 태어난 35살의 엘로이 트루길로는 브라운스빌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국경 경비대원이 따라와 차에서 내리게 하더니 심하게 때리고 86세 된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울타리까지 수갑을 찬 채 가게 했다. 그는 너무 심하게 맞아 12바늘 째였고 정식으로 체포되기 전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 사건 이후 친선사절로서 얘기를 낳으려 미국에 가려던 미의 여왕이 국경 경비대에 의해 감금당했는데 경비대원들은 여인의 치마를 걷어올려 배를 만지고 아이를 낳으려 미국에 간다고 욕을 해댔다. 1993년 불법 이주하려던 멕시코 여성이 미국 경비대원에게 짐마차에서 겁탈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 경비대원은 강간과 유괴로 고소당했지만 음란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불법이주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판결, 기각됐다.

1996년 이스라엘 국경 경비대가 일자리를 찾아 불법으로 이스라엘로 넘어오려던 팔레스타인 여섯 명을 두들겨 팬다. 같은 달에 국경 경비대가 11명의 팔레스타인들을 때리고 성폭행 했다. 하지만 보복이 두려워 정식으로 고소하진 못했다.

5. 시민들의 이주민 폭행

국경 경비대 수가 증가하면서 자국민사이에 이주민 혐오증이 퍼졌으며 이주민을 처단하려는 조직이 생겨나게 되었다. 결국 경비대의 수적 증가는 이주민 노동자 학대를 늘어나게 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는 “밥(Bob)의 소년들”이란 단체가 반자동총을 차고 둠 샌디에고시에서 이주노동자를 벼르며 찾았다. 이들을 폭력을 서슴지 않고 행사하며 경

비대가 올 때까지 노동자들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있다. 경비대들은 이런 이주노동자 처단 단체들을 알고 있으며 그 수가 늘어나는 데도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남아공에서 이와 유사한 이주노동자 혐오증이 있다. 1997년 남아공 노점상들은 벽돌로 다른 나라 아프리카 행상들을 두들겨 팤다. 이 사건 전에도 이주민 노점상을 구타한 사건이 한차례 있었다.

이스라엘 국경 경비대는 정열적인 정통파 유대인과 나무에 매달려 있는 팔레스타인을 그런 티셔츠를 제작했다. 이 티셔츠에 새긴 나무는 경비대를 상징하여 그들의 거친 면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이런 갖가지 인권 침해 사건들이 전세계에서 일어났을 때 바로 고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B. 위법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방안들

이주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송환국 모두 적극적인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를 통해 국경에서 일어나는 위법행위와 외국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행해진 인권침해를 줄이면 국경지대 사망자도 줄 것이다.

1. 교육을 통한 해결방안

국경지대 상황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늘리기보다 있는 경비대들을 더 철저히 훈육시켜야 한다. 교육부문에서는 헌법에 인권법 전반과 세계인권법안을 포함시켜 강도 있고 조직적인 정규과정이 들어가야 한다.

국경 경비대가 외국노동자의 문화를 알고 그들의 언어를 훈련하면 노동자와 경비대 사이에 말이 통할 수 있어 대결구도를 줄일 수 있다. 경비대들을 외국노동자들과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더 잘 교육시킨다면 오해와 의사불통은 줄어들 것이다.

2. 사회운동을 통한 해결 방안

송환국은 국경지대에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공익방송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공익방송은 국경경비대이나 검문소를 피해 이주하려 하거나 위험한 통로나 방법으로 이주하려는 이들의 사망률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 방송은 단순히 불법 이주자를 줄이기 위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갖가지

대중매체(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등)를 통해 불법 이주자들을 위한 경고 장치가 될 것이다.

멕시코 국경근처인 남 텍사스 레이오사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Stay Out Stay Alive라는 이 운동은 리오그란데의 상황과 최근 국경에서 죽은 이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으로 불법 이주하려는 이들에게 합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법률적 해결방안

불법 이주자와 그 가족에게 행해진 국경 경비대들의 행패를 호소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야만 한다. 어떤 나라든 송환국이라면 나라간에 협조하며 가장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아래의 항목들을 포함해야 한다.

- 대결상황에서 국경경비대가 취할 수 있는 행동 통제 강령을 전 세계화한다.
- 경비대가 위 행동규율을 불이행하거나 인권침해를 했을 때는 면책 특권도 박탈 당할 수 있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탄원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탄원 절차 중 이주노동자를 도울 수 있도록 각 국경에 영사관 직원들 배치하여 도움을 준다.
- 탄원 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익명을 보장한다.
- 일단 희생자가 탄원을 하면 형사상 또는 민사상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경비대의 조사 과정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 한다.
- 송환국 정부는 불법 입국자와 그 가족에게 행한 국경 경비대의 위법행위 문제를 줄이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또는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정기적으로 송환국에 알려야 한다.

C. 자국내 알려지지 않는 이주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주의 학대

아래 내용은 인권보호협회(HRA)가 1997년 인권 해결 협의회에 제출한 10월 13일자 보고서에서 발췌했다. IOM에 따르면 전세계 외국 노동자중 오천만 명 이상이 여자이며 미국에 있는 외국 노동자중 절반 이상이 여성이라고 한다. 여자라는 상황과 게다가 노동자라는 최악의 상황은 그들을 폭력과 학대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한다. 그래도 여성들은 누구도 자기 얘기를 믿을 거라 생각지 않기에 일자리와 아이를 잊

지 않으려고 남편과 고용주의 학대를 참아내며 가난하게 살아간다.

외국 여성 노동자들은 고용된 나라의 말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며 교육을 받지 못한 이가 많아 자기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어디에다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침해 사건들은 알려지지 못한다. 아주 한 여성들은 말없이 고통 당할 뿐이다.

전세계 외국 여성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다. 즉 자국내 아주여성노동자 학대에 대한 전세계적 용인과, 불법입국자라고 통관소에서 non-national여권을 압수하는 정부정책, 아주민 여성노동자들의 법적 권리에 대한 무지와 이에 대응한 사회제도와 성폭행에 관한 고용자 고소절차 미비가 그것이다.

D. 아주여성들이 당하는 폭력을 고발하는 방안들

남아공, 필리핀, 중국을 포함해 외국여성노동자학대문제를 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위원회를 만든 나라가 많다. 우선 정부가 현 문제를 진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해결책의 첫 번째 단계이다. 하지만 법안을 기초하고 통과한다 하더라도 일어나고 있는 학대의 모습을 해결할 수 없다. 일례로 여성차별철폐조약에 서명한 국가 대부분이 협약에 명시된 조항을 어기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는 사회적, 법적 해결책과 더불어 진실한 마음자세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1. 사회적 해결방안

[1] 교육과 예방책

교육을 통해 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실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고 다양한 차원에서 중재를 도모할 수 있다.

의료, 법률, 사회 봉사간의 협조

교육과정은 지역의료단체와 사회봉사단체, 법률봉사단체, 그리고 대학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또한 이들은 반드시 외국여성 노동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어느 지역이든 남편과 고용주의 학대를 피하려는 여성들은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한다.

적당한 훈련

의료진은 자국내 외국여성노동자들이 받는 알려지지 않은 폭력을 아는데 더 힘써야 한다. 다른 관련 분야 봉사자들이 받는 교육과정에 의료진과 실습생도 참석해야 한다. 설명할 수 없거나 수시로 일어나는 상처들, 자기방어를 위한 상처들, 구타를 말해주는 자국들을 포함해 신체에서 발견되는 폭행들을 의료진을 통해 알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폭행자료를 정리하고 적당한 의료진을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심화된 교육은 아니다. 폭행사례를 기록하고 적당한 치료를 할만큼 충분한 여유가 없기에 그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기가 힘들다. 개업 의사들도 안전책과 위험부담, 지역 자료에 관해 알아야 한다.

더욱이 사회봉사자와 의사라면 외국노동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둘간에 문화장벽이 있다면 실제 학대받는 외국여성노동자수를 정확하게 통계 낼 수 없다.

지구촌 문화 훈련

자국내 숨겨진 학대문제와 관련된 문화장벽을 해결하려면 모든 국가는 자국민의 폭행을 당하고 있는 남녀모두를 교육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남녀 모두 어떤 문화권에서든 자국내 숨겨진 폭력은 나쁜 것이라고 배워야 한다. 단 한 명의 여성도 “폭력을 청하지 않는다”.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자국내 알려지지 않은 폭력과 관련된 논쟁을 할 수 있는 고등학교까지 관련과정을 실행,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비폭력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의료진들은 해당외국인 노동자에게 심리 치료도 해야 한다.

심화 프로그램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고립을 없애고 이들의 문제를 문서화하기가 힘든 점을 보완하는데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선 각 국가들은 빨리 심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심화 프로그램은 학대문제해결을 돋고 있는 법률봉사자와 사회봉사자들과 노동자들 간의 고리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모형이 될 만한 것이 있다.

1995년 외국 노동자 의료네트워크는 자국민 폭력 예방과 교육 부분에 농장에서 일하는 스페인계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예방책을 발전시키며 평가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 의료 네트워크는 질병통제와 예방센터, 근친 폭력 방지팀, 라이더 캠페시나

스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라이더 캠페시나스는 공동체내에 생긴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농장 여성 노동자들이 만든 자치 공동체 조직이다.

농장 여성노동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라이더 캠페시나스는 농장 외국 노동자 생활에 친숙하며 농장 노동경험이 있는 이들을 낮 동안은 농장에 가게하고 저녁에는 노동캠프로 보내 노동자들이 어디서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 주게 한다. 사회 봉사 제도를 통해 여성들은 자국민 학대를 치료받을 수 있고 의사들은 피해자가 일하다가 학대받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른 심화프로그램은 한 달에 한 가지 의료혜택이나 협의과정을 갖는 식이다. 한 달에 한번 지역 법률 서비스나 사회 봉사자들은 회의를 열어 외국인 노동자가 아래 항목들을 필요로 했을 알린다 ; 교육, 노동자의 안전, 건강, 법률적인 도움, 이민 등.

심화 프로그램으로 이주여성노동자들 사이에 법적 권리가 보장되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펴질 것이다. 게다가 외국 여성 노동자를 직접 돋고 있는 기구들은 유엔에 직접 학대와 인권침해행위를 알릴 수 있다.

[2]. 정부의 재정지원

정부가 법률과 사회봉사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는 여성의 권리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는 여성 노동자들이 산아제한을 할 수 있고 요금을 내지 않고도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성노동자의료센터를 계속 지원해야 하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라도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3].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알리기

심화프로그램에 계속 재정 지원을 하려면 사회봉사자들은 지역매체와 국경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외국여성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침해 행위들을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므로 대중매체는 뜻을 모아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어 사회 봉사자와 의료 봉사자를 위한 재정 지원 삭제를 철회하라고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

2. 법을 통한 해결방안

[1] 인권침해 탄원 계획안 작성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필리핀에서 시행하는 인권 보호 계획도 필리핀 여성의 역할과 관련된 국민 위원회가 전적으로 준비했고 계획안은 특별히 여성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5년 성폭력 금지법을 통과시킨 여성국회를 더욱 발전시키려면 이마그나 카르타(계획안)를 노동자들이 접할 수 있어야 하며, 외국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해외에 있는 필리핀 인들을 돋는 제도- 소규모 가내사업을 하는 여성들도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법안 등-를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

위 계획안들은 외국여성노동자들이 당하는 위법행위를 정부가 알아채어 없앨 수 있는 적극적 방법들이다.

[2] 바꿔야 하는 관례들

여권을 압수하는 정부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이, 자국내에 외국 노동자가 도착하면 여권을 강제로 뺏을 수 있는 법안은 개정되어야 한다. 자국내 외국 노동자 이주의 자유를 고용주가 통제할 수 있도록 정책화하게 되면 이주민여성노동자들은 더욱더 착취와 학대를 당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비평가들은 지적한다.

여권을 압수하는 고용주

정부가 아니라 고용주가 외국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하는 나라는 그 관례를 범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하는 이는 엄중히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 형법은 그 형태가 실형을 선고하든 높은 벌금을 매기든 여권 압수 금지책으로 기능 해야 한다.

누가 이 법을 어기는지 알 수 있는 사회·법률 봉사기관들이 이 형법을 집행할 수 있다면 이 악습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학대 고용주에 대한 소송

고용주 학대에 대한 주연방 국가의 소송

모든 나라는 성차별과 성폭력사건에 법적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권리에 관한 연방공화국 제7조가 표본이 될 수 있다.) 성차별과 성폭행사건에서 원고가 이기기는

어렵지만 위법행위를 소송할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고용주의 부당 행위에 대한 노동자 탄원절차

법적 소송뿐 아니라 모든 고용주는 고용주가 행한 성폭력과 학대를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는 탄원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고용주가 그런 과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총재산(NET WORTH)에 따라 벌금을 매겨야 한다.

여권운동가들은 행동강령을 가지고 단 한 명의 여성일지라도 탄원절차를 밟으려 한다면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 수 있고 피고가 벌금형이라고 판단되면 희생자를 대신해 법적 소송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여권운동단체에게 위임해 줄 것을 제안한다.

[4] 여성 상관 증대의 절실한 필요성

많은 외국여성노동자들은 상관의 자리에 더 많은 여성이 있어야 한다고들 말한다. 여성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남성들이 짚은 여성들을 괴롭힌다고 호소한다. 게다가 여성들은 남성 상관이 자신들의 호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에 얘기하기가 힘든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경영진들이 노동자들의 언어를 더욱 잘 이해해야 상관과의 불만거리를 얘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II. 전세계 외국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고발하는 노동단체의 규칙

1997년 10월, 이때부터 19년 전에 국제연합총회는 외국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을 지켜줄 조약을 기초할 수 있는 노동단체를 설립했다. 하지만 9개 나라 모로코, 필리핀, 이집트, 콜롬비아, 가보 베르데, 세이셸, 스리랑카,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우간다 만이 외국노동자협약을 비준했다. 그 뒤 칠레와 멕시코가 더 서명했을 뿐이다. 외국노동자협약은 지금 전세계외국인 노동자들이 당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다른 누구도 외국노동자들이 당하는 인권침해문제를 고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HRA는 외국노동자협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외국노동자를 위한 노동단체가 계속 운영되는 데 비판적인 시각이다. 협약을 이행하려면 노동단체는 위법행위들을 낱낱이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1] 노동단체는 전세계 외국노동자가 겪는 문제들을 고발해야 한다.

유엔 협약기구들이라면 세계외국노동자의 문제를 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각기 맡은 업무가 너무 많아 구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없다. 국제 노동기구(ILO)가 전례적으로 노동문제에 관해 사법권을 갖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당하는 위법행위들을 고발할 수는 없다. 국제노동기구 산하조직들이 정부나 고용주 또는 노동기구가 탄원을 올려야 하며 외국노동자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외국 노동자를 위한 노동단체는 외국노동자와 그 가족이 당하는 인권침해행위들을 구체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다.

다른 노동단체는 성공사례를 연구하고 난 뒤 외국노동자문제를 다루는 노동단체도 아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면 “정부와 민간기구들(NGO)로부터 관련정보들을 모을 수 있는 위원회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부나 민간기구는 모든 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난점이 있기 때문이다.” (1995년/15,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 노동단체

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 Resolution)는 다음 임기동안 외국노동자의 인권을 이행,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시급히 노동조직을 개편 해야 하며 실제 일어난 위법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HRA는 노동단체는 외국 노동자실종과 불법감금을 해결하려는 노동단체들(Working Groups on Enforced or Voluntary Disappearances and on Arbitrary Detention)이 발전시킨 과정을 눈여겨볼 것을 권한다. 이런 단체들은 더욱 재판과정을 발전시켜 국경지대에서 일어나는 위법행위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었다.

1980년대 노동단체는 1)외국 노동자 실종에 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 2)정부기구 비정부 기관에서 정보를 받고 찾는 권한 3)받는 정보들을 어디에 쓰는 게 효과적 인지 기억해 둬다가 알아서 정보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고작이었다.

1984년 노동단체는 관례적인 외국 노동자 실종사건들을 없애도록 도울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받았다. 이 노동 단체와 마찬가지로 외국노동자를 위한 노동기구도 인권침해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적극적 조치에는 외국노동자권리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사법적 절차도 포함해야 한다.

노동단체가 사법 수속에 의하지 않는 약식(즉결)처분기관(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의 과정도 알아보길 권한다. 약식(즉결)처분기관은 피고자가 소송과 관련된 정부기구와 서로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한 개인소송 재심제도를 발전시켰다. 노동기구는 그 과정에 송국정부를 포함한 개인소송 재심제도를 발전시켰다. 노동기구는 그 과정에 송국정부를 포함시킬 수 있는 절차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만들려면 송국정부가 더욱 그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노동기구는 다른 노동단체,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약식처분기관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여성폭력반대노동기구(Working Group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를 예로 들면, 이들도 외국여성노동자들이 당하는 학대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 단체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노동기구가 알고 있어야 일이 중복되지 않는다.

인권 위원회 (제54회)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관한 정부간 노동단체 전문가들

조항 의제에 관한 11개 조항

위원 선거

1. 1997년 11월 17일 첫 번째 회의에서 노동단체는 Jorge A. Bustamante(멕시코) 씨를 대표 보고자로 선출했다.

의제 채택

1. 첫 번째 회의에서 첫 번째 협의회 조항의제를 기초로 채택한다. 의제는 아래와 같다.

1. 위원 선거

2. 의제 채택

3. “외국 노동자와 인권”을 주제로 한 제 15회 인권해결위원회 실행

참석자들

1.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회 회원국들: 알제리, 오스트리아, 브라질, 칠레, 중국, 쿠바, 체코공화국,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프랑스,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니카라과, 러시아연방국, 남아프리카,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2. 협의회에 참석한 국제연합 회원국들: 에스토니아, 과테말라, 헝가리, 모로코, 페루,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태국, 터키, 베네수엘라

3. 협의회에 참석한 국제연합 비회원국: 홀리 시

4. 협의회에 참석한 정부간 기구와 특별기구와 국제 연합 대표들: 국제연합 피난민을 위한 고위 사무국, UNAIDS, 국제노동기구, 유럽연합, 외국노동자를 위한 국제기구

5. 협의회에 참석한 경제 사회위원회 자문격 비정부기구 대표들: 아프리카 교육발전연합, 세계교회협의회 국제부 소속 교회 위원회, 국제 인권 기구, 모든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국제운동(IMADIR)

문서화

1. 처음 협의회를 열기 전에 노동단체는 E/CN. 4/AC. 46/1997/1문서를 만들었다. 이것은 조항 의제들을 포함하며 협의회 배경과 참고 문서로 총회, 인권위원회, 소수 민족 보호와 차별철폐에 관한 소위원회문서들도 포함된다.

2. 또한 노동단체는 처음 협의회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 국제연합 산하기구, 특별기관, 정부간, 비정부간 기구로부터 받은 정보와 언질들을 Secretary-General's invitation답변용으로 갖는다.

CRP. 1 과테말라 보고서

CRP. 2 과테말라 보고서

CRP. 3 중미 인권보호위원회 보고서

CRP. 4 중미 인권보호 위원회 보고서

CRP. 5 사이프러스 보고서

CRP. 6 국제노동기구 보고서

CRP. 7 국제 이주민 기구 보고서

CRP. 8 피난민을 위한 국제 연합 고위 사무국 보고서

CRP. 9 강제 이주를 위한 지역연합 보고서

CRP. 10 강제이주를 위한 지역연합 보고서

CRP. 11 IOM 보고서

CRP. 12 룬드에 있는 영국국제연대 보고서

CRP. 13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 보고서

CRP. 14 멕시코 보고서

CRP. 15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교육연대 보고서

CRP. 16 모로코 보고서

CRP. 17 신 프론티어 보고서

CRP. 18 국제 이주자 권리 감시 위원회 보고서

CRP. 19 이집트 보고서

CRP. 20 UNHCR 보고서

CRP. 21 엘 살바도르 보고서

1. 노동단체는 자문 보고서들, 출판물, 기사, 단체 내 비서관이 직접 수집하거나 다른 소식통들로부터 받은 다른 문건들을 활용하기도 했었다.

조직과 회의 진행 방식(methods of work)

1. 노동단체는 대중모임과 폐쇄 모임을 혼합한 회의 방식을 선택했다. 노동단체에는 5개의 대중모임과 4개의 폐쇄 모임이 있는데 그 중 한 모임은 부분적으로 폐쇄됐다.

2. 대중모임 과정중 노동단체의 위임권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여기에는 정부, 국제연합 기구들, 특별기구들, 정부간 기구, 비정부 기구들도 함께 했다.

3. 노동단체는 고문자격은 없지만 ECOSOCDP 속한 비정부기관들도 협의회에 참석하는 데 동의했다.

4. 노동단체는 두 회기의 성과들을 담은 통합보고서를 제 54회인권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B. 첫 번째 협의회에서 다룬 주요 의제들

1. 정보모음

19. 노동단체는 1997/15 resolution때 위원회가 내놓은 가정들을 공고하게 할 만한 실례를 찾는데 도움이 될 정보모음을 자체 내 권한으로 보았다. 노동단체가 자체 권한을 정보모음으로 보자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취해야 할 수단들이 무엇인지 토론하게 되었다. 정부간 기구와 비정부 기구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질문서를 이용하도록 결정됐다. 시간에 제한이 있고 질문서의 주목적이 설명에 있기 때문에 질문서가 되도록 간결해야 했다.

20. 질문서의 첫째 질문은 이주자수 통계자료를 한 눈에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자료획득을 목적으로 했다. 둘째 질문은 이주자의 인권을 보호, 증진시키려고 회원국들이 취한 조치들에 관한 통계와 내용이 담긴 자료획득을 목적으로 했다. 세 번째 질문은 1997/15 resolution 때 위원회가 언급한 이주자 인권문제에 관해 회원국들의 인식수준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주자 인권문제의 내용이나 수치자료를 얻는 데는 목적을 두지 않았다. 네 번째 질문에선 회원국들이 이주자 인권문제를 얘기하는 국제연합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했는지를 물음으로 이주자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공식 수단들이 실제 중요함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두었다.

21. 질문서는 1997년 12월 2일에 제출됐다. 질문서의 내용은 이 보고서 annex I에 포함돼 있다. [목차 참조]

2. 지역별 전

22. 노동단체는 각 지역에서 이주와 관련한 발전내용과 주요 동향을 직접 발표하려는 회원국들을 초청하기로 했다. 발표요약은 아래 다시 소개한다.

23. 아프리카 : Pambou Tchvounch씨는 이주는 최근에 일어난 현상으로 개발로 인해 갑자기 그렇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에서 이주하기 위해 드러나는 유형은 전형적으로 세 가지라고 한다.

24. 첫 번째 유형 ; 항시 기회를 엿보는 개척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주로 개척자들은 아프리카인의 삶(정신)이 몸에 배여 있지 않기에 이들이 사는 지역을 기호 지역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유형의 이주를 선진국에선 불법이주로 본다. 이런 유형의 이주는 반드시 복잡한 문제들을 일으켰다.

25. 두 번째 유형 ; 국가가 장려하는 집단 이주로 대형 공공사업 추진 등 경제정책을 이유로

국가는 외국 노동력을 끌어들일 수 있다. 여기에는 이주자와 관련된 헌법, 보호, 책임과 관련해 문제들이 발생했다.

26. 세 번째 유형 ; 남아프리카, 앙골라, 콩고민주주의공화국같이 산업대도시로 이주처럼 인구 유입이 빚어낸 자연스러운 이주현상으로 이주 지역에서 이주자들은 기존특성과 문화를 확고히 하려는 기존 지역 민족과 같이 살아가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27. 위 세 가지 유형에서는 이주자 자신을 표현하고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가 일어났다. 이주자들은 외국인 혐오로 인한 자국민의 위험한 태도들과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당한 조치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 이주자는 다른 이의 권리뿐 아니라 이주자 자신의 권리 알아야 한다.

28. 아프리카는 지구촌화와 그로 인한 이주로 일어나는 영향들에 협력하기도 해야 함을 덧붙였다.

29. 아시아 : Quayes씨는 자신이 제시한 이주 범위-송환국, 체류국, 통행국, 이 세 가지를 혼합한 국가, 산업국가로부터의 이주도 포함-에 흥미로운 혼합현상이 생겼다고 했다. 이 현상을 일으킨 한 가지 주요 요소로 노동력 이동으로 같은 아시아지역 내 나라간의 이주를 들 수 있다. 남아시아에서 걸프로 한차례 이주가 있었다. 걸프지역은 대규모 외국노동자를 받는 노동 개방시장으로 정식으로 노동자들이 들어온다. 최근 10년간 동남아 국가들 중에는 노동이주자를 받았던 나라들이 있는데 이 노동력은 본국뿐 아니라 통행국이 된 나라의 소지역에서도 발생했다. 이 지역은 비자발적으로 이전된 사람들같이 소지역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들뿐 아니라 통행과 인구이동이라는 일반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30. 이주자를 보내는 나라는 갖는 딜레마, 즉 송환국은 정식노동이동이 최대한 늘어나고 동시에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민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최대한의 보호를 보장받길 바랬다. 송환국과 체류국간 협약을 더 심도 있게 채워야 함을 인식해야 하며 가정부같이 학대받기는 쉽지만 그것을 알리기 힘든 노동자들을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송환국의 노동법을 알아야 했다.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매매는 특별히 여성들이 여러 가지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큰 문제다. 이주 도중에 구류 당하는 여성들도 있는데 이 경우 여성들은 집으로 되돌아갈 방도도 없고 약속 받은 일자리도 잃게 된다. 불법체류 여성들은 처벌이나 국외 추방 당하기도 쉽다. 아동에 관해서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방송에 집중을 받았던 소위 “카멜 자키들(camel jockeys)”이라 불리는 이들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된 나라들은 상황을 파악해 대처방안을 구하고 있다고 했다.

31. Quayes씨는 많은 정부의 또 다른 중요 영역으로 지구촌화를 꼽았다. 진정한 자유 지구촌 시장은 노동을 포함해 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지구촌 무역의제에서 이주노동을 다루어야 했다. 그러나 각 나라의 필요와 시장간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했다.

32. Shmshur씨는 동유럽 이주의 주요 특징을 얘기했다. 그는 주요한 지정학 변형-소련과 유고슬라비아의 해체,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변형과 민주원리와 시장 지향적

원리에 기초를 둔 중앙계획경제의 변형-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출입국 과정의 자유와 새 국경순찰제도채택도 언급했다.

33. 동유럽은 점점 더 동유럽내·외 이주가 활발(대부분 중·단기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주를 해 상업활동과 (때로는 불법)일자리를 갖는 이들이 많아 이주는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의 필수부분으로 매김 했다. 노동력 이동, 다시 말해 일자리를 위한 이주 그 자체는 이 지역에서 이주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는 동유럽국 상호 또는 다중 조약을 체결할 뿐 아니라 지역내 적당한 헌법을 발전시켜 이주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

34. 동유럽국중 중동, 남-동남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져 서유럽과 남유럽에 체류한 대규모 통행이주(transit migration)움직임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불법이주자들은 국제 악덕상인 조직패들한테 불들려 동유럽으로 끌려간다. 끌려가는 중에 아주 잔인한 인권유린이 행해지는 데 종종 여성들이 당하기도 한다. 이 맥락에서 발표자는 동유럽에서 서유럽 또는 다른 나라도 끌려간 여성들이 강제로 매춘을 해야만 했던 처지에 집중했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국내외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5. 동유럽 국가들은 외국인 혐오 확산을 막아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관련된 적절한 절차를 이미 밟고 있다.

36. Bustamante씨는 노동단체 연구회원으로서 자신이 다루고 있는 부분을 얘기했다. 그는 미대륙에서 일어나는 이주가 기본적으로 노동 이주며 불법 이주까지 포함해 가장 큰 이주 흐름은 멕시코와 미국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했다. 멕시코는 이주국(미국으로, 소규모로는 캐나다)이며 동시에 이민국(보통은 중미에서, 남미에서 대규모로 들어옴)이다. 또한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간에 이주가 있으며 브라질, 파라과이, 페루, 에콰도르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적게는 칠레로 이주를 하기도 한다.

37. 미대륙에서의 이주에 관해 질문을 하면 재미있는 점을 있다고 한다. 왜냐면 멕시코서 불법상황에 처해있는 이주자들을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동시에 이주자가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상황이 원시적이며, 권리를 조직적으로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8. 발표자는 최근 불법 이주자에 관해 법안이 채택됐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가 그것이라고 규정했다. 캘리포니아에서 the case of Proposition 187은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증을 학립한 특별한 사건으로 대표된다. 이런 불행한 관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행하고 있다고 한다.

39. 자기 나라에서 멀리 갈수록 더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는 구조적이라

고 한다. 이 문제는 체류국 정부에 이주자들이 이주자 권리에 관해 의문을 제기할 수 힘과 권리의 빈약에서 기인했다. 발표자는 위임권을 가진 노동단체는 이 문제를 토론할 때 이러한 사고 틀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발표자는 이주자와 관련된 문제인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증 해결을 위한 권리 행사, 더해 가는 이주자 학대, 토론되어야 하는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증을 심화하는 사고 틀의 관계를 지적했다. 다시 말해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은 이주자인권회복에 중요한 장애물이다. 발표자는 이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체류국 헌법에 구체적인 이주자 권리의 협의할 것을 제의했다.

40. 발표자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주함에 관해 최근 두 나라 학자들이 내놓은 전혀 없는 두 나라 관계분석도 언급했다.

41. do Rosario씨는 서유럽얘기를 하면서 서유럽과 그 외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주자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했다. 학대사건이 일어나면 대다수 나라가 전형적인 징계절차를 따라 사건을 다룬다고 한다. 물론 불법이주자는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경범죄를 저지른 이주자를 추방하는 문제와 관련해 다른 의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이주자 추방과 관련된 문제들, 예를 들어 법률적용화대법칙이 지켜지는지, 국외추방에 적용되는 예방책은 무엇인지, 다른 법안과 행정관례들로 쉽게 이주자와 그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지 등을 어느 국가에서 정리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재미 있을 거라고 했다.

42. 발표자는 이주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발전에 공헌을 해도 이주자권리에 보장되는 공공성은 매우 미흡하며 관련된 정보도 거의 없는 형편이라고 언급했다.

43. 발표자는 이주에 관해 토론할 만한 의문들-최근 국제연합 총회에서 토론중인 주제-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의회를 개최하는 데 찬성했다. [목차 참조]

3. 이주자 정의에 관해

44. 노동단체는 넓게 봤을 때 이주자에 대한 개념을 자체 위임권에 포함해 해석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IOM이 말하는 이주자 개념 해석과 정의를 노동도구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IOM이 제출한 원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IOM 헌법에 따라 이주자 정의는 대다수의 이주자를 포함하며 그 범위가

다소 넓다”:

“조항1에서 말하는 ‘이주자’란 용어는 이주하기로 결심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에 강제 이주가 아닌 개인의 편리를 이유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경우다.”

“‘이주자’범위 안에 불법이주자를 포함시켜 그들에 대해서도 알고있어야 한다. 불법 이주는 지구촌 위기를 부채질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위 정의에 따르면 이주자는 피난민, 도망자, 강제이주자는 언급하지 않는다. 반면 ‘이주’라는 용어는 경제적 목적을 가진 이주자뿐 아니라 피난민, 추방당한 이, 강제 이주자의 이주도 포함한다.”(목차 참조)

4. 학대반응

45. 이주자들이 받는 학대는 노동단체가 고민하는 중심 주제다. 다섯 명의 전문가들은 송환국과 체류국과 관계된 학대문제에 대해 국내법이 이주자와 체류국간의 통합(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차이), 통치권과 불법이주간의 관계 이주자 납치문제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각기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학대문제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무엇보다도 이주자들이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46. 이주자의 힘없음은 이주자를 그렇게 만드는 사회적 요소와 국가와 이주자와의 관계의 특징이었다. 그 상황은 이주자를 포함해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주로 특정 국가의 국경에서 생겼다.

47. 학대의 기준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자주 침해당하는 이들에게 맞추는 데 동의됐다. 특별히 여성과 아동뿐 아니라 불법이주자에게도 관심을 보였다.

48. 이주자 학대에서 파생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은 노동시장에서 생기는 이주자학대(최저 임금기준보다 낮은 임금기준과 위험한 노동 환경), 인종차별이 깔린 적대감, 전형적인 방식을 통해 표현되는 외국인 혐오, 빼뚤어진 대중심리를 바탕으로 한 차별정책을 포함했다.(목차참조)

3.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약 (전문)

A/RES/45/158
제 69차 본회의
1990. 12. 18

목차

전문

제1부 적용 범위와 정의

제2부 차별없는 권리 보장

제3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인권

제4부 정규로 등록된 혹은 정규인 법적 지위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인정되는 추가적인 권리

제5부 특별 형태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한 규정

제6부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 이주에 관한 건전하고 공정한 그리고 인도적인 동시에 합법적인 조건의 정비

제7부 조약의 적용

제8부 최종 규정

(注) 이 조약을 번역할 때 국제 인권 규약 같이 법전으로 되어 정식 번역이 된 것은 그에 따랐다.

전문

이 조약의 체약국은

인권에 관한 국제연합의 기본적인 합의문서, 특히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 여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조약, 어린이의 권리조약에 담긴 기본원칙을 고려해서,

국제노동기관의 테두리 속에서 형성된 관련 합의문서 특히 취업을 위한 이주에 관

한 조약(97호 조약), 학대 상황에 있는 이주 및 이주노동자의 기회와 처우의 평등보호에 관한 조약(143호 조약), 취업을 위한 이주에 관한 권고(86호 권고), 이주 노동자에 관한 권고(151호 권고),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29호 조약),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105호 조약)이 명시한 원칙과 수준을 고려해서,

교육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약에 포함되는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고문 및 기타 잔악한 비인도적인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취급 또는 혐별을 금지하는 조약, 범죄방지 및 범인 취급에 관한 제4회 국제연합회의선언, 법집행관을 위한 행동 강령, 노예제폐지에 관한 제조약을 상기해서,

나아가 국제노동기관(ILO)이 표방하는 목적의 하나가 자국 이외의 나라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노동자의 권리보호인 점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련하는 사항에 관한 이 기관의 지식과 경험을 상기해서,

국제연합 조직 속의 제기관, 특히 인권위원회, 회사개발위원회 및 UN식량농업기관(FAO), UN교육과학문화기관(UNESCO), 세계보건기관(WHO) 등의 국제기관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 실시해 온 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몇몇 나라에서 지역적 합의 내지 이국간 합의를 기초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대해 달성된 성과와 이 영역에서의 이국간 및 다국간 합의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고,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국제사회에서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주 현상의 중대성과 확산을 이해하고,

이주노동자의 집단이 관계국과 그 국민에 미치는 충격을 인식하고, 관계국들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수용함으로써 국가간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범의 확립을 회구하고,

여러 원인, 특히 출신국에 거주하지 않은 것 및 취업국에 체재하는데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원인이 되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공격을 받기 쉬운 상태에 있음을 고려해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가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적절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함을 확신하고,

이주는 가족의 확산을 수반하므로 이주노동자 본인에게도 또한 그 가족에게도 종종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됨을 고려하고,

이주에 포함되는 인도적인 제문제는 비정규 이주의 경우에 한층 심각하다는 것에 유의해서,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면서 이주노동자의 밀수나 운반을 방해하고 폐절(廢絕)할 것을 장려하는 적절한 행동이 취해져야 함을 확신하고,

정규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비정규인 지위에 있는 이주노동자는 종종 타노동자보다도 불리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일부 고용자는 이익을 위해 비정규취로를 찾는 점을 고려해서,

모든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다 광범위하게 승인된다면 비정규 지위에 있는 이주 노동자의 취로에 기대는 것은 면취질 것이며 나아가 정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얼마간의 권리를 보충적으로 인정한다면 모든 이주노동자와 고용자가 그 나라의 법률과 절차를 존중하고 복종할 것을 촉진할 것임을 배려해서,

그러므로 보편적으로 적용될 포괄적인 조건에 의거해 기본이 되는 규범을 재확인하고 확립해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의 국제적인 보호를 이루는 것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다음과 같이 협정했다.

제1부 적용범위와 정의

제1조

1. 이 조약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혹은 신념, 정치적 의견과 기타 의견, 국민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나이,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 어떤 차별도 없이 적용된다.

2. 이 조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이주의 준비, 출국, 이동, 취업국에 체재해서 유급 활동을 하는 동안 및 출신국 또는 거주국으로의 귀환을 포함하는 이주의 모든 기간에 적용된다.

제2조 이 조약의 적용상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을 갖지 아니하는 나라에서 유급 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또는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a) “월경노동자”란 이주노동자로 그 주소를 인접국에 보유하고 통상 적어도 매주 한 번은 귀가하는 사람을 말한다.

(b) “계절노동자”란 이주노동자로 일이 계절 조건에 의한 성질을 갖고, 일 년중 한정된 시기만 취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c) “선원(여기서 선장은 포함안됨)”이란 이주노동자로 고용되어 외국국적의 선박에 승선해서 취로하는 사람을 말하고, 여기에는 어업노동자도 포함된다.

(d) “해상시설노동자”란 이주노동자로 국적을 갖지 아니한 나라의 관할에 속하는

해상시설에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e) “순회노동자”란 이주노동자로 어느 한 나라에 주소를 갖고 일의 성질상 단기 간 다른 나라들에 나갈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f) “특정사업노동자”란 이주노동자로 취업국에 의해 고용자가 그 나라에서 행하는 특정의 사업에 한해 취로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의 입국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g) “특별취업자”란 이주노동자로 (i)고용자에 의해 한정된 일정 기간 취업국에 파견되어 의뢰받은 특정의 직무 또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거나 (ii)한정된 일정 기간 전문직업, 통상, 기술 또는 기타 전문적인 고도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iii)취업국의 고용자의 요구에 의해 한정된 일정 기간 임시적 또는 단기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어서 그 체재기간이 만료하던가 혹은 이들 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출국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h) “자영취업자”란 이주노동자로 고용계약에 의하지 않고 유급 활동에 종사하고 통상 단독 혹은 가족과 함께 일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취업국의 법을 적용 내지 이국간 또는 다국간 조약에 의해 자영취업이라고 인정받은 기타의 이주노동자를 말한다.

제3조 이 조약은 이하의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a) 국제기간에 고용된 또는 국제기간에서 파견된 사람 혹은 관할구역외에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느 한 나라에 고용되었거나 그 나라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입국과 재류자격에 대해서 일반 국제법 내지 특정의 국제적 결정 혹은 협정이 규제하는 사람

(b) 어느 한 나라 내지 그 국외에서의 대표로 고용되거나 파견되어 개발계획과 기타 협력계획에 참가하는 사람으로, 입국과 재류자격에 대해서 취업국과의 협약에 의해 규제받고 있고 그협약에 의해 이주노동자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

(c) 투자가로서 출신국이외의 나라에 주거를 가진 사람

(d) 난민 및 무국적자. 단 관련하는 조약, 체약국의 관계국내법 또는 유효한 국제합의문서에 의해 적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 학생 및 연수생

(f) 선원 및 해상시설 노동자로 취업국에 주거를 정한 것 및 국내에서 유급 활동을 수행할 것을 인정받지 아니한 사람

제4조 이 조약의 적용상 “가족”은 이주노동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법의 적용상 혼인과 다름없는 효력이 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 부양하는 자녀 및 기타 피부양자로 관련하는 법 또는 관계국의 이국간 내지 다국간 협정에 의해 가족으로 인정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 이 조약의 적용상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a) 취업국의 법률 및 그 나라가 가맹하고 있는 국제합의에 의해 입국, 체재, 유급활동으로의 종사가 인정될 때는 정식으로 등록된 혹은 정규인 법률상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b) (a)항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는 혹은 비정규인 법률상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이 조약의 적용상

(a) “출신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국적을 가진 나라를 말한다.

(b) “취업국”은 이주노동자가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종사하고 있거나 예전에 종사했던 나라를 말한다.

(c) “통과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취업국으로 이동, 혹은 취업국에서 출신국 또는 통상의 거주국으로 이동을 할 때 통과하는 나라를 말한다.

제2부 차별없는 권리 보장

제7조 이 조약의 체약국은 인권에 관한 국제합의문서에 따라 영역내에 있거나 그 관할권 아래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의견 기타 의견 국민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나이,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고 이 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할 의무를 진다.

제3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인권

제8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신국도 포함해서 어느 나라로부터도 자유롭게 떠날 수가 있다. 이 권리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단 그 제한이 법률에 정해져 있어서 나라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의 건강 혹은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는데 필요하고 동시에 이 조약의 제3부에서 인정하는 다른 권리와 양립하는 것일 때는 제외한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언제라도 출신국에 입국해서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된다.

제10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고문 또는 잔학한 비인도적인 혹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취급 혹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11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노예 상태에 두는 것은 금지된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강제노동에 복종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3. 본조 2항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중노동을 수반하는 구금형을 과할 수 있는 나라에서 권한이 있는 재판소에 의해 형벌이 언도되어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4. 본조의 적용상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작업 또는 역무(役務)로 본조 3항에서 언급되지 않고 동시에 재판소의 합법적인 명령에 의해 어류되는 것 또는 그 어류를 조건부로 면제되는 것에 통상 요구되는 것
(b) 사회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해의 경우에 요구되는 역무
(c) 시민으로서의 통상의 의무로 여겨지는 작업 또는 역무로 그 나라의 시민에게 부과된 것

제12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스스로 선택한 종교 또는 신념을 수락 또는保持할 자유 및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해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교도에 의해 그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스스로 선택한 종교 또는 신념을 수락 또는保持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강제를 받지 않는다.

3.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는 제한에 의해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의 건강 혹은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을 과할 수 있다.

4. 이 조약의 체결국은 어느 한쪽이나 양쪽 다가 이주노동자인 부모 및 경우에 따라 법정보호자가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자신의 종교적 및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의 존중을 약속한다.

제13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간접받는 일없이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구두, 수서(手書) 혹은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본인이 선택한 다른 방법에 의해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 및 사고를 요구하고 받아들이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

3. 본조 2항의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 및 책임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과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법률이 정하고 동시에 다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한한다.

(a)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나라의 안전, 공공질서 또는 공중의 건강 혹은 도덕의 보호

(c) 전쟁선전의 금지

(d) 차별, 적의, 폭력선동이 되는 국민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중오의 선전 금지
제14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가족, 주거, 문서 혹은 기타 통신에 대해 자의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간섭받지 않고 명예 및 신용을 불법적으로 공격받지 않는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이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단독으로 혹은 다른 사람과 공동해서 소유하는 재산을 자의적으로 뺏을 수 없다. 취업국의 국내법에 의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재산 또는 그 일부가 수용당할 때는 그 사람은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공무원에 의하든 개인적, 사적집단 혹은 조직에 의하든 관계없이 폭력, 상해, 협박 및 위협에 대해 국가의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법집행에 있어서 관헌에 의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동일인성 확인 조사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4.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단독으로 집단적으로도 자의적으로 체포 또는 구류할 수 없고, 또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그 자유를 뺏을 수 없다.

5.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체포할 때 가능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체포 이유를 밝히고, 그 사람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밝힌다.

6. 형사상의 죄를 문책받고 체포 또는 구류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재판관 또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다른 관헌의 면전에서 신속히 연행되어 가는 것으로 하고 타당한 기간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 혹은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을 구류하는 것이 원칙이어서는 안되며, 석방에 있어서 재판 기타 사법상의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의 출두 및 필요한 경우에 판결의 집행을 위한 출두가 보증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7.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체포되어 재판계정중에 형무소 내지 구치시설에 수용되거나 기타 어떤 양태이든 신병이 구속되어 있을 때,

(a) 그 사람의 요구가 있으면 체포, 구류 사실과 그 이유를 출신국 또는 그 이익을 대표하는 나라의 영사관 또는 외교사절단에 지체없이 전한다.

(b) 그 사람은 외교사절단과 통신할 권리를 가진다. 그 사람으로부터 외교사절단

앞으로 보내온 통신은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하며, 또한 그 사람은 외교사절단으로부터의 통신을 지체없이 받을 권리를 가진다.

(c) 그 사람은 외교사절단과 통신하고 그 대표자와 면회하고, 변호인에 관한 협의를 행할 권리에서 조약 및 국가간 협정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 지체없이 고지받을 권리가 있다.

8. 체포 또는 구류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재판소가 그 구류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지체없이 결정할 것 및 그 구류가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재판소에서 절차를 밟을 권리를 가진다. 그 사람이 절차에 참가하고 거기서 쓰이는 언어를 이해할 것 또는 말을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인의 원조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필요한 때는 비용은 부상으로 한다.

9.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위법으로 체포되거나 구류되었을 때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1. 자유를 박탈당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인도적으로 동시에 인간 고유의 존엄과 문화적 독자성을 존중해서 취급된다.

2. 기소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는 분리되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지위에 상응한 개별의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소년의 피고인은 성년과는 분리하고 가능한 신속히 재판에 부친다.

3. 취업국 또는 통과국에서 이주에 관한 규정에 위반해서 구금된 사람은 실행 가능한 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혹은 재판계정증의 사람과는 분리해서 취급한다.

4. 재판소가 과한 형벌로서 구금이 집행중일 때 처우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교정 및 사회복귀에 두어야 한다. 소년의 범죄자는 성인과는 분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나이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한 취급을 받는다.

5.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구류 혹은 구금 기간 중 가족의 면회에 관해서 그 나라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6. 이주노동자가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기간 중에는 권한 있는 당국은 그 노동자의 가족, 특히 배우자 및 미성년의 자녀에 초래될 수 있는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 취업국 또는 통과국에서 효력을 가진 법률에 의해 구류 또는 구금 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같은 지위에 있는 당해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8.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이주에 관한 법률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속되었을 때는 그 사람은 구속의 비용을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18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재판소 앞에서 그 나라의 국민과 평등하다. 그 사람은 형사상의 죄의 결정 혹은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시비를 결정하기 위해 법률에서 설치된 권한있는, 독립의 동시에 공평한 재판소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형사상의 죄를 문책받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기초해서 유죄가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3.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형사상의 죄의 결정에 대해서 적어도 다음의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a) 그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그 죄의 성질 및 이유를 고지 받을 것

(b) 방어 준비를 위해 충분한 시간 및 편익이 주어지고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하는 것

(c) 부당하게 지연되는 일없이 재판을 받는 것

(d) 스스로 출석해서 재판을 받고 직접 또는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서 방어 할 것.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를 고지받을 것. 사법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지불수단을 갖지 않을 때 자기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변호인을 부치는 것

(e)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심문하거나 이에 대해서 심문하게 하는 것 및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같은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의 출석 및 이에 대한 심문을 요구하는 것

(f) 재판소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거나 말을 못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인의 원조를 받는 것

(g) 자기에게 불리한 공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

4. 소년의 경우에는 절차는 그 나이 및 그 경정의 촉진이 바람직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한다.

5. 유죄 판결을 받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기초해서 그 판결 및 형벌을 상급의 재판소에 의해 재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6.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화정판결에 의해 유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후에 새로운 사실 혹은 새롭게 발견된 사실에 의해 오심이 있었음이 결정적으로 입증된 것을 이유로 해서 그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사면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에 복종한 사람은 법률에 의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그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적당한 시기에 밝혀지지 않았던 것의 전부 혹은 일부가 그 사람의 책임에 귀한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그 나라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서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은 행위에 대해 재차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제19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실행을 할 때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던 작위 혹은 부작위를 이유로 해서 유죄로 되지 않고,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에 적용되었던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과할 수 없다. 범죄가 행해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벌을 과하는 규정이 법률에 있는 경우에는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형벌을 과할 때에는 그 사람의 지위, 특히 재류(在留)와 취업의 권리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가 없으면 안된다.

제20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만을 이유로 해서 구금되지 않는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노동계약에서 생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만을 이유로 해서 재류 내지 취업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고, 또한 국외퇴거로 처벌받지 않는다. 단, 당해의 의무 이행이 재류 또는 취업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제21조 법률에 의해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이외의 사람이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 일국의 영역으로의 입국, 체재, 거주, 정주를 인정하는 서류 혹은 노동허가증을 몰수, 파기 혹은 파기할려고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들 서류의 압수가 권한에 기초해서 행해질 때는 상세한 수령증이 교부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여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파기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제22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집단적 추방의 조치는 금지된다. 추방은 개별적으로 심리를 받아 결정되어야 한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권한있는 당국이 법률에 따라 행하는 결정에 의해서만 이 조약의 체약국의 영역으로부터 추방된다.

3. 추방의 결정은 그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요구할 때는 결정은 서면으로 전달되며 국가의 안전에 의한 예외적인 경우이외에는 결정의 이유도 진술되어야 한다. 이들 권한에 대해서는 결정 이전에 늦어도 결정을 할 때에 관계자에게 고지되는 것으로 한다.

4. 사법당국에 의한 최종 판결인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자는 자기에 대한 추방처분에 반대하는 이유를 말하고, 권한있는 기관에 자기의 주장을 심사하게 할 권리를 가진다. 단, 국가의 안전에 관해서 어쩔 수 없는 이유로別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그 사람은 심사 기간중, 추방 결정의 집행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5. 집행이 끝난 추방처분이 나중에 취소되었을 때 그 사람은 법률에 기초해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전의 결정은 그 사람이 당해 나라에 재입국할 것을 방해하는 이유로 쓰여져서는 안된다.

6. 추방의 경우에는 관계자에게는 출국전 또는 후에 임금 기타 마땅히 그 사람에게 귀해야 할 것에 관한 주장 또는 미처리 의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기회가 주어진다.

7. 추방 결정의 집행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상이 된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은 출신국이외의 나라로 입국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추방될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을 당해 이주노동자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단, 관계자의 이동에 필요한 비용의 변상을 요구하는 것은 허락된다.

9. 취업국으로부터의 추방은 임금청구권 내지 그 사람에게 마땅히 귀해야 할 다른 권리를 포함해서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당해 나라의 법률에 따라 획득한 어떠한 권리도 손상시키지 않는다.

제23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이 조약이 인정한 권리가 손상되었을 때는 출신국 내지 그 나라의 이익을 대표하는 나라의 영사관 또는 외교사절단의 보호와 원조를 의뢰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추방의 경우는 이 권리에 대해 관계자에게 지체없이 고지되고, 추방하는 나라의 당국은 이 권리의 실현에 편의를 도모해 주어야 한다.

제24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모든 장소에 있어서, 법률 앞에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이주노동자는 보수 및 이하의 점에서 취업국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우보다도 불리하게 취급받지 않는다.

(a) 타 노동조건, 즉 초과근무, 노동시간, 주휴, 유급휴가, 안전, 보건, 고용관계의 종료 기타 그 나라의 법률과 관행에서 노동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

(b) 타 취로조건, 즉 취로의 최저연령, 재택근무 기타 그 나라의 법률과 관행에서 취로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

2. 사적인 고용계약에서 본조 1항에서 말하는 평등처우의 원칙을 일탈하는 경우는 위법이다.

3. 체약국은 이주노동자가 그 체재 또는 취업이 부정규인 것을 이유로 평등처우 원칙으로부터 이끌어지는 어떠한 권리도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고용자가 부정규성을 이유로 해서 법률상 및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피하거나 한정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으로 한다.

- 제26조 1. 체약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이하의 권리를 인정한다.**
- (a) 노동조합 및 법률에 따라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기초해서 설립된 조직의 집회 및 활동에 참가할 권리
 - (b) 노동조합 기타 조직에 가입할 권리
 - (c) 노동조합 기타 조직의 원조 및 지원을 요구할 권리
2. 1항에서 정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전, 공공질서,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주의사회에서 필요하고, 법률에 정해져 있는 제한이외에는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 제27조 1. 사회보장에 대해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취업국에서 적용되는 법률 및 이국간 내지 다국간 조약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는 취업국의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과 동등한 처우를 받는 것으로 한다. 출신국과 취업국의 소관관청은 본항의 적용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협약을 행할 수 있다.**
2. 국내법에 의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급부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그 나라는 같은 지위에 있는 국민에게 인정되는 처우를 기초로 해서 그 사람이 행한 각출 상당액을 상환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제28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그 나라의 국민과 평등하게 처우받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생명의 유지와 회복하기 어려운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로 되는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구급의료는 그 사람이 재류 또는 취업이 부정규임을 이유로 거절되어서는 안된다.**
- 제29조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성명, 출생 등록,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30조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그 나라의 국민과 평등한 처우를 기초로 교육을 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 사람이 공립유치원 및 학교에 입학할 것을 요구할 때 부모중 어느 한 사람이 재류 내지 취업이 부정규이거나 취업국에서의 그 자녀의 재류가 부정규임을 이유로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 제31조 1. 체약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문화적 독자성의 존중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출신국과의 문화적인 유대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2. 체약국은 그 노력을 조장하고 촉진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32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취업국에서의 재류가 종료되었을 때 소득, 저축 및 국내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해서 가재 및 소지품을 이송할 권리를 가진다.**
- 제33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이하의 사항에 관해서 출신국, 취업국, 통과국 중 관계하는 나라로부터 정보를 고지받을 권리가진다.**

- (a) 이 조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
- (b) 그 나라에 있어서 입국의 조건, 그 사람의 권리와 의무, 법률과 관행 및 그 사람이 행정절차 기타 절차에 따를 것을 가능케 하기위한 기타의 사항
2. 체약국은 전항의 정보의 보급 또는 고용자, 노동조합 및 기타 적절한 단체나 조직에 의한 정보제공을 확보하는데 적합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국과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3.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요구했을 때는 적절한 정보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는 것으로 한다.
- 제34조 이 조약의 본 제3부의 어떠한 규정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통과국과 취업국의 법과 규칙에 따를 의무 또는 그들 나라의 주민의 문화적 독자성을 존중할 의무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 제35조 이 조약의 본 제3부의 어떠한 규정도 정규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정 규인 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지위를 합법화하는 것 또는 그렇게 할 권리 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이 조약의 제6부에서 정하는 건전하면서 공정한 국제적 이주환경을 확보하는 조치를 해쳐서는 안된다.**
- 제4부 정규로 등록된 혹은 정규인 법적지위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인정되는 추가적인 권리**
- 제36조 취업국에서 정규로 등록된 혹은 정규인 법적 지위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이 조약의 제3부에서 정하는 제 권리에 추가하여 본 제4부에서 정하는 제 권리도 향유하는 것으로 한다.**
- 제37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신국을 떠나기 전 또는 늦어도 취업국에 입국 할 때에 입국하는데 적절한 모든 조건, 특히 체재, 그 사람이 종사하는 것이 인정된 유급 활동에 관한 조건, 취업국에서 충족시켜야 할 필요조건 및 이들 조건의 변경을 신고 할 당국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출신국 또는 취업국으로부터 충분한 교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38조 1. 취업국은 사정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재류와 취업의 자격에 영향 내지 일시출국이 인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때 취업국은 출신국에 있어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요구와 의무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이러한 일시출국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9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취업국의 영역내에서 이동의 자유와 거주지를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2. 본조 1항의 권리는 어떠한 제한에도 따르지 않는다. 단, 그 제한이 법률로 정하고, 국가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의 건강 혹은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이 조약에서 인정된 다른 권리와 모순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 권리 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취업국에서 노동조합 기타 단체를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2. 본조 1항의 권리는 어떠한 제한에도 따르지 않는다. 단, 그 제한이 법률에서 정하고, 민주주의사회에서 국가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의 건강 혹은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신국의 법률에 따라 그 나라의 공공의 사항에 참가하고 그 나라의 선거가 있을 때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2. 관계국은 법률에 따라 동시에 적절하게 이들 권리의 실행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

제42조 1. 체약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이 제한에 있어서 자유롭게 선거된 대표자를 가질 수 있음을 바르게 예측해야 한다.

2. 취업국은 국내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생활 및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과 협의하고 또 그 참가를 촉진해야 한다.

3. 이주노동자는 취업국의 국가의 주권에 의한 결정으로서 권리를 부가받는 한, 이 나라에서의 정치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제43조 1. 이주노동자는 이하의 것의 이용, 참가에 대해서 취업국의 국민과 평등하게 처우받는 것으로 한다.

(a) 교육시설 및 교육사업. 이것은 당해시설 및 사업의 입학요건 및 기타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b)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 사업

(c) 직업훈련 및 재훈련시설 및 제도

(d) 주택. 이는 사회주택계획 및 부당하게 고액인 집세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다.

(e) 사회, 보건사업. 이것은 당해사업의 참가자격에 적합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f) 협동조합사업 및 자주관리사업. 이것은 이주노동자의 지위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당해 단체가 정하는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g) 문화활동사업

2. 체약국은 취업국에 의해 인정된 재류자격이 적절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을 때에 이주노동자가 본조 1항이 정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한 처우가 효과적으로 확보될 조건을 신장해야만 하는 것으로 한다.

3. 취업의 법적 상태에 관계없이 고용자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주택계획, 사회, 문화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취업국은 이 조약 7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런 종류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 서비스를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에 따른 것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 1. 체약국은 가족이 사회의 자연 동시에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 및 나라에 의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이주노동자 가족의 동거의 보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2. 체약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배우자, 법률의 적용상 혼인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 및 미성년으로 부양을 요하는 독신의 자녀와의 동거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권한에 속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3. 취업국은 그밖의 가족에 대해서도 인도적인 견지에서 본조 2항에서 정한 것과 동등한 조치를 취하도록 호의적으로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제45조 1. 이주노동자의 가족은 이하의 것의 이용, 참가에 대해서 취업국의 국민과 평등하게 처우받는 것으로 한다.

(a) 교육시설 및 교육사업. 이것은 당해 시설 및 사업의 입학요건 및 기타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b)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시설 및 제도. 이것은 참가자격에 적합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c) 사회, 보건사업. 이것은 당해 사업의 참가자격에 적합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d) 문화활동사업

2. 취업국은 적절한 경우에는 출신국과 협력하고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지역의 학교에 입학하고 특히 지역의 언어를 배우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3. 취업국은 이주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모국어 및 출신국의 문화 교육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고 출신국은 적절한 경우 언제든지 이에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4. 취업국은 필요한 때에 출신국의 협력을 받아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위해 모국 어에 의한 특별교육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46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관계국의 법률, 관련하는 국제적인 합의 및 관세 동맹에 참가함으로서 발생하는 의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가재와 소지품 및 취업

국이 인정한 유급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류에 대해서 이하의 경우에 수출입의 세가 면제된다.

(a) 출신국 또는 통상의 거주국으로부터 출국을 할 때

(b) 취업국으로 1회째 입국을 할 때

(c) 취업국으로부터 최종적인 출국을 할 때

(d) 출신국 또는 통상의 거주국으로 귀국을 할 때

제47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그 수입 및 저축, 특히 가족 부양에 필요한 임금을 취업국에서 출신국 또는 기타 나라에 송금할 권리를 가진다. 송금은 그 나라의 국내법의 절차 및 국제합의에 따라서 행한다.

2. 관계국은 송금을 간략하게 하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제48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취업국에서의 수입에 관해 이중과세의 결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하와 같이 취급되는 것으로 한다.

(a)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같은 상태에 있는 그 나라의 국민보다도 고액이거나 부담이 보다 심한 과세를 할 수 없다.

(b)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세의 감면을 받는다. 또한 가족 부양을 위한 공제를 포함해서 같은 상태에 있는 그 나라의 국민에게 인정되는 공제를 받는다.

2. 체약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수입 및 저축에 대한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노력을 한다.

제49조 1. 국내법에 의해 재류와 취업에 개별의 허가를 요하는 취업국은 이주노동자의 재류기간을 최단이라도 유급활동의 기간과 같게해서 허가해야 한다.

2. 취업국에서 유급활동을 선택할 자유가 인정되는 이주노동자는 취업기간의 만료이전에 유급활동이 종료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규한 법적지위에 있는 것 내지 재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본조 2항의 이주노동자에게 다른 유급활동으로 구직활동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재류를 취급하는 당국은 적어도 실업급부의 수급자격이 있는 동안은 재류자격을 취소해서는 안된다.

제50조 1.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혼인을 해소했을 때에 취업국은 그 이주노동자의 가족 중에서 가족의 동거의 재현을 기초로 재류하고 있던 사람의 재류허가에 대해 호의적으로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취업국은 그 사람이 이미 재류한 기간을 고려해 넣어야 한다.

2. 전항의 재류허가를 인정받지 못한 가족의 경우에는 출국 전에 처리해야 할 사항을 행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의 시간적 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3. 본조 1, 2항의 규정은 취업국의 국내법 또는 이국간 내지 다국간의 조약으로 이와 같은 가족에게 인정되는 재류 또는 취업의 권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51조 이주노동자는 다음 항 이하에서 정하는 조건과 제한의 범위내에서 취업국에서의 유급활동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2. 취업국은 어떠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이하를 행할 수 있다.

(a) 국내법에서 정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필수인 특정의 범위의 취업, 직능, 노무, 작업으로의 진출 제한

(b) 국외에서 취득된 직업상의 자격 승인에 관한 입법에 의한 유급활동의 선택의 자유 제한

3. 취업국은 취업 허가가 기한부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더 한층 이하를 행할 수 있다.

(a) 그 이주노동자가 이미 일정기간 유급활동을 행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재해 왔을 때에 한해서 유급활동의 선택의 자유를 인정할 것. 단, 이 기간은 국내의 법령으로 정하고 동시에 최장으로 2년을 넘어서는 안된다.

(b) 자국의 국민 또는 국내법 또는 이국간 혹은 다국간의 합의에 의해 동등하게 취급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의 유급활동으로의 진출을 제한할 것. 이 제한은 일정기간 유급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재해 온 이주노동자에게 대해서는 안된다. 더욱기 이 기간은 국내의 법령으로 정하고 동시에 최장으로 5년을 넘어서는 안된다.

4. 취업국은 취로를 해 온 이주노동자가 자영으로 취업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및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허가의 조건을 정한다. 이때 이주노동자의 국내에서의 합법적인 취로의 실적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한다.

제53조 1. 이주노동자의 가족으로 그 사람 자신이 무기한 또한 자동연장이 가능한 입국 또는 체재의 허가를 얻은 경우는 그 사람은 유급활동에 관해서 이 조약의 52조에 의해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인정된다.

2. 이주노동자의 가족으로 유급활동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체약국은 이국간 또는 다국간의 합의의 범위내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하는 허가를 내준다. 체약국은 이때 다른 노동자에 우선해서 허가하도록 유리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

제54조 1. 재류와 취업허가의 규정하는 바 및 이 조약의 25조, 27조에서 정하는 권리를 손상시키는 일없이 이주노동자는 이하의 점에서 취업국의 국민과 평등하게 처우

받는 것으로 한다.

(a) 해고로부터의 보호

(b) 고용보험

(c) 실업대책사업에의 참가

(d) 이 조약의 52조의 범위내에서 실업 내지 취업이 종료할 때의 전직

2. 노동계약의 조항이 고용자에 의해 침해를 받아 이주노동자가 고충을 겪을 경우에는 이 조약의 18조 1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해 취업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기할 수 있다.

제55조 유급활동을 허가받은 이주노동자는 허가조건의 범위내에서 그 유급활동의 수행에 관해서 취업국의 국민과 평등하게 처우받는 것으로 한다.

제56조 1. 이 조약의 본 제4부에서 말하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취업국으로부터 추방당하지 않는다. 단, 그 추방이 국내의 법령에서 명시된 조약 제3부가 정하는 보호 규정에 따라서 행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의 재류 내지 취업 허가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 추방 수단에 호소하는 것은 금지된다.

3.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의 추방의 시비를 결정할 때에는 인도적인 견지와 그 사람이 취업국에서 체재한 기간의 길이가 고려되는 것으로 한다.

제5부 특별 형태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한 규정

제57조 이 조약의 본 제5부에서 특히 규정된 특별 형태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정규로 등록되거나 정규인 법적 지위에 있는 사람은 본조 제3부에서 정한 권리와 다음 조 이하의 규정을 포함한 제4부에서 정한 권리를 향유한다.

제58조 1. 이 조약의 2조 2항 (a)에서 말하는 월경노동자는 조약의 제4부에서 정하는 권리 중, 그 사람이 취업국 영역내에서의 거주와 노동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향유한다. 이때 그 사람이 취업국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 고려되는 것으로 한다.

2. 취업국은 월경노동자가 일정기간 후에 유급활동을 선택할 자유를 승인하도록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이 권리의 승인이 그 사람이 월경노동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미치지 않는다.

제59조 1. 이 조약의 2조 2항 (b)에서 말하는 계절노동자는 조약의 제4부에서 정하는 권리 중 그 사람의 취업국에서의 거주와 노동에 적용할 수 것으로 계절노동자로서의 재류자격에 적합한 것을 향유한다. 이때 그 사람이 취업국에 년간 일부만 거주하는

사람임이 고려된다.

2. 체약국은 본조 1항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장기간 그 영역내에서 취로해 온 계절노동자가 다른 유급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국간 및 다국간의 합의 범위내에서 입국신청에 대해 다른 노동자보다도 우대한다.

제60조 이 조약의 2조 2항 (e)에서 말하는 순회노동자는 조약의 제4부에서 정하는 권리 중 그 사람의 취업국 영역내에서의 거주와 노동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순회노동자로서의 재류자격에 적합한 것을 향유한다.

제61조 1. 이 조약의 2조 2항 (f)에서 말하는 특정사업노동자와 그 가족은 조약의 제4부에서 정한 권리가 보장된다. 단, 43조 1항 (b) 및 (c), 43조 1항 (d) 중 사회주택계획에 관한 부분, 45조 1항 (b) 및 52조에서 55조까지의 권리는 제외한다.

2. 특정사업노동자가 그 사람의 노동계약의 조항이 고용자에 의해 지켜지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을 때 이 조약의 18조 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고용자를 관할하는 나라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3. 체약국은 적용해야 할 이국간 합의에 따라 특정사업노동자가 그 사업에서 취로하고 있는 동안 출신국 또는 통과 거주국의 사회보장으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체약국은 이 점에서 권리의 부정 또는 지급의 중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4. 이 조약의 47조의 규정 및 이국간 내지 다국간 합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국은 특정사업노동자의 임금을 출신국 내지 통과 거주국에서 지불할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제62조 1. 이 조약의 2조 2항 (g)에서 말하는 특별취업자는 조약의 제4부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단, 조약 43조 1항 (b) 및 (c), 43조 1항 (d) 중 사회주택계획에 관한 부분, 52조, 54조 1항 (d)는 제외한다.

2. 특별취업자의 가족은 조약의 제4부에서 정하는 권리 중 이주노동자의 가족에 관한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53조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 1. 이 조약의 2조 2항 (h)에서 말하는 자영취업자는 조약의 제4부에서 정해진 권리를 보장받는다. 단, 고용자와 노동계약을 행하는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어 할 권리는 제외된다.

2. 이 조약의 52조 및 57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을 때는 자영취업자의 경제활동의 종료는 그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취업국에서의 체재 및 경제활동의 허가 취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단, 그 사람의 재류가 특정의 유급활동과 결합되어 있음이 분명할 때는 제외한다.

제6부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이주에 관한 건전, 공정, 인도적 동시에 합법적인 조건의 정비

제64조 1. 체약국은 이 조약의 7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이주의 건전, 공정 동시에 인도적인 조건을 정비하는 관점에서 적절하게 협의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협의, 협력을 할 때는 노동력의 수요와 자원의 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타의 면에서 필요로 하는 것 및 이주가 관련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적절하게 배려되는 것으로 한다.

제65조 1. 체약국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이주에 관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사업을 행한다. 이 사업의 직무에는 이하의 것이 포함된다.

(a) 이런 종류의 이주에 관한 정책을 책정하고 실시하는 것

(b) 이런 종류의 이주문제를 안고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정보교환, 협의 및 협력을 하는 것

(c) 국제이주 및 취업에 관한 정책, 법률, 규칙, 타국과의 합의 및 기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특히 고용자, 노동자 및 그 조직에 제공하는 것

(d)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출국, 이동, 도착, 체재, 유급활동, 출국과 귀국을 할 때 필요로 하는 허가, 수속, 준비 및 취업국에서의 노동과 생활의 조건, 관세, 통화, 세금 및 기타 관계법률에 관해서 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

2. 체약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의 면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알맞은 영사관 기타 업무가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제66조 1. 외국에서 취로하는 노동자를 모집하는 견지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권리 는 이하의 사람에 한해서 인정된다.

(a) 이 업무를 집행하는 공영의 공공사업 또는 기관

(b) 관계국간의 합의에 기초하는 취업국의 공공사업 또는 기관

(c) 이국간 또는 다국간의 합의에 의해 설립된 기관

2. 관계하는 체약국의 법률과 관행에 기초해서 설립되고, 당국에 의한 허가, 승인 및 감독을 받는 알선업자, 준비단계에 있는 고용자 또는 그 대표자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허락된다.

제67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귀국하기로 결정했거나, 재류 또는 취업 허가가 만기 됐거나 혹은 취업국에서 부정규한 법적 지위로 됐을 때 그들의 출신국으로의 귀환이 질서로써 수행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관계하는 체약국은 적절하게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2. 정규인 법적 지위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해서는 관계하는 체약국은 그 사람이 출신국에서 안정된 거주를 재현하는데 적당한 경제환경을 조장하고 출신국에서의 사회, 문화면에서의 영속적인 통합의 재현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관계국간에서 합의에 달한 바에 따라 적절하게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68조 1. 체약국은 통과국도 포함해서 부정규한 법적 지위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불법 내지 비밀리의 이동과 취업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각국이 그 관할 안에서 취할 수단에는 이하의 것이 포함된다.

(a) 이주나 이민에 대해서 사람을 오도(誤導)하는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단

(b)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불법 또는 비밀리의 이동을 발견하고 근절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이동을 조직하고 수행하고 혹은 이것을 조장하는 개인, 집단, 존재에 효과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수단

(c) 부정규한 법적 지위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폭력, 협박, 위협을 가하는 개인, 집단, 존재에 효과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수단

2. 취업국은 그 영역내에 있는 부정규한 법적 지위의 이주노동자에 의한 취로를 근절하는데 적절하고 효과적이면 어떠한 수단이라도 취하는 것으로 한다. 적절한 경우는 고용자의 처벌도 이에 포함된다. 단, 이런 종류의 수단을 사용할 때 이주노동자가 고용자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서는 안된다.

제69조 1. 체약국은 그 영역내에 부정규한 법적 지위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거주할 때는 그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관계체약국이 국내법 및 이국간 또는 다국간의 합의에 기초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합법화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에는 그 사람의 입국 주변의 사정, 재류기간 기타 관련하는 고려되어야 할 사정, 특히 그 가족의 상태에 관한 사정에 적절한 배려를 해야만 한다.

제70조 체약국은 정규인 법적 지위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노동과 생활 조건이 적절, 안전, 건강의 기준 및 인간 존엄성의 원칙을保持하도록 자국민에 적용되는 것을 하회하지 않는 호의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제71조 1. 체약국은 필요할 때에는 사망한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의 遺體를 출

신국에 상환하는 편의를 도모한다.

2.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의 사망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체약국은 문제를 조급히 해결되도록 관계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보상문제의 해결은 국내법, 이 조약 및 관련하는 이국간 또는 다국간의 합의에 따라 하는 것으로 한다.

제7부 조약의 적용

제72조 1. (a) 이 조약의 적용을 심사하기 위해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b) 위원회는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했을 때는 10명의, 41번째의 체약국에서 효력을 발생한 후는 14명의, 덕망이 높고, 공정하며, 동시에 이 조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충분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한다.

2. (a)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의 배분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특히 출신국과 취업국 사이에서 균형있게 행해지는 것 및 주요한 법형태가 대표되는 것을 고려에 넣어서 체약국에 의해 선거를 위해서 지명된 사람의 명부에서 체약국에 의한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각 체약국은 자국민 중에서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b)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 위원의 최초의 선거는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행하고, 이후는 2년마다 행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 위원의 선거일의 늦어도 4개월 전까지, 체약국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의 성명을 2개월전까지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한다. 사무총장은 지명된 사람의 알파벳순에 의한 명부(이들을 지명한 체약국명을 표시한 명부로 한다.)를 작성하고 명부를 늦어도 각 선거 1개월 전까지 지명된 사람의 경력을 첨부해서 체약국에 송부한다.

4. 위원회 위원이 선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해 국제연합 본부에 소집된 체약국 회의에서 행한다. 이 회합은 체약국의 3분의 2를 정족수로 한다. 이 회합에서는 출석하고 또 투표하는 체약국 대표에 의해 투표된 표의 최다수로 동시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지명된 사람으로써 위원회에 선출된 위원으로 한다.

5. (a)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직무를 수행한다. 단,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명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이 5명의 위원을 최초 선거 후 즉시 그 선거를 행한 체약국 회의의 의장에 의해 제비뽑기로 뽑는다.

(b) 위원회의 4명의 추가적인 위원 선거는 이 조약이 첫번째의 체약국에서 효력

을 발생한 후에 본조 2, 3 및 4항의 규정에 따라서 행한다. 이때 선출된 추가적인 위원 중 2명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이 2명의 위원은 그 선거를 행한 체약국 회의의 의장에 의해 제비뽑기로 뽑는다.

(c) 위원은, 재차 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자격을 갖는다.

6.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선언했을 때는 그 전문가를 지명한 체약국은 그 잔여 임기에 대해 자국민 중에서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이 신규의 임명은 위원회에 의해 승인받아야 한다.

7.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이 조약에서 정하는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원 및 편의를 제공한다.

8.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9.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조약의 관련 규정에서 규정된 국제연합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73조 1. 체약국은 다음의 경우에서 이 조약의 실시를 위해 취한 입법상, 사법상, 행정상 및 기타의 조치에 관한 보고를 위원회에 의한 검토를 위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a) 당해 체약국에 대해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내

(b) 그 후는 5년마다 또는 위원회가 요청할 때

2. 보고에는 이 조약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장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요인과 장해를 기재한다. 보고에는 또한 당해 체약국이 안고 있는 국제이주의 이동의 성격에 관한 정보를 함께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3. 위원회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정하는 것이외의 준칙을 결정한다.

4. 체약국은 자국의 보고를 국내에서 공중이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4조 1. 위원회는 체약국이 제출하는 보고를 심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그 나라로 송부한다. 그 나라는 본조에 기초해서 위원회가 행한 의견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보고에 대해서 체약국에 정보의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정례 회의가 개최되는 이전의 적절한 시기에 체약국이 제출한 보고 사본과 보고의 검토에 관련하는 정보를 국제노동기관의 사무총장에게 송부하고, 국제노동기관의 사무국이 기관의 권한 영역에 속하고 동시에 이 조약이 취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문지식으로써 위원회를 원조할 수 있도록 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더우기 위원회와의 협의 후 보고에 포함되는 사항 중 어

느 한 전문기관 또는 국제기관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는 것의 사본을 당해 전문기관 또는 국제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전문기관, 국제연합의 제기관, 정부간기관 기타 관련하는 기관에 요청해서 그 기관의 활동분야에 속하고 동시에 이 조약이 취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해 서면으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국제노동기관에 대해 협의자격으로써 위원회의 회의에 참가하는 대표를 임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한다.

6. 위원회는 특정의 전문기관, 국제연합의 제기관 내지 정부간기관에 대해서 그 기관의 권한영역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검토할 때에는 출석해서 청문에 응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한다.

7. 위원회는 이 조약의 실시상황에 대해 국제연합 총회에 년차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는 체약국에서 제출된 보고와 의견에 특히 기초를 두고, 위원회에 의한 고찰과 권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8.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년차보고서를 이 조약의 체약국, 국제연합의 경제사회 이사회 및 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관 사무총장 및 기타 관련 제기관에 송부한다.

제75조 1. 위원회는 수속 규칙을 채택한다.

2. 위원회는 임원을 2년의 임기로 선출한다.

3. 위원회는 원칙으로서 매년 회합한다.

4. 위원회의 회합은 원칙으로서 국제연합 본부에 두고 개최한다.

제76조 1. 이 조약의 체약국은 이 조약에 기초하는 의무가 다른 체약국에 의해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취지를 주장하는 어느 한 체약국으로부터의 통보를 수리하고 동시에 검토하는 권한을 위원회가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본조 규정에 기초해서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본조 규정에 기초하는 통보는 위원회의 당해 권한을 자국에 대해 인정하는 선언을 행한 체약국에 의한 통보인 경우에 한해 수리하고 동시에 검토할 수가 있다. 위원회는 선언을 행하지 않은 체약국에 대한 통보를 수리해서는 안된다. 본조 규정에 의해 수리된 통보는 이하의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a)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이 이 조약에 기초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통보에 의해 그 사안에 대한 당해 체약국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이 체약국은 또한 사안을 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이 인정된다. 통보를 수리한 나라는 수리 후 3개월이내에 당해 사안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기타의 문서를, 통보를 송부한 나라에 제공한다. 이들 문서는 당해 사안에 대해 이미 취해졌거나, 현재 취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 취할 수 있는 국내적인 수속 및 구제조치에 가능한 동시에 적절한 범위에서 언

급해야만 한다.

(b) 최초의 통보를 수령한 후 6개월이내에 당해 사안이 관계 체약국 쌍방이 만족하도록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체약국도 위원회 및 상대 체약국에 통보함으로써 당해 사안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c) 위원회는 위임받은 사안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국내적인 구제조치가 취해졌거나 다 끝났는지를 확인한 후에 한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내법의 원칙에 따라 위임받은 사안을 취급한다. 단, 구제조치의 실시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d) 본항 (c)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해서 위원회는 이 조약이 정하는 의무의 존중을 기초로 해서 사안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 체약국에 알선을 한다.

(e) 위원회는 본조에 의해 심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의 회합을 개최한다.

(f) 위원회는 본항 (b)에 기초해서 위임받은 어느 사안에 대해서나 본항 (b)에서 말하는 관계 체약국에 대해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g) 본항 (b)에서 말하는 관계 체약국은 위원회에서 사안이 검토되는 동안은 대표를 출석시킬 권한을 가진 것으로 하고, 또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도 가진다.

(h) 위원회는 본항 (b)의 통보를 수리한 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보고를 제출한다.

(i) 본항 (b)의 규정에 의한 해결에 도달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사실 및 도달한 해결에 대해

간결하게 기술한 것을 보고한다.

(ii) 본항 (d)의 규정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는 관계 체약국간의 논쟁을 통해 관련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한다. 당해 보고에 관계 체약국의 구두에 의한 의견의 기록 및 서면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위원회는 관계 체약국에 한해서 논쟁점과 관련한다고 여겨지는 견해를 통지할 수 있다.

어느 사안이든 보고는 관계 체약국에 통지된다.

2. 본조의 규정은 이 조약의 체약국 중 10개국이 1항의 규정에 기초하는 선언을 행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선언은 체약국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寄託하는 것으로 하고,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다른 체약국에 송부한다.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보에 의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본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송부된 통보에 의한 어떤 사안의 검토도 방해하지 않는다. 사무총장이 선언의 철회 통고를 수령한 후는 당해 체약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않는 한 다른 어떤 체약국에 의한 통보도 수리하지 않는다.

제77조 1. 체약국은 그 관할하에 있는 개인 또는 그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 조약에서 정하는 어느 한 개인적인 권리가 그 체약국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의 통보를 위원회가 수리하고 동시에 검토할 권리를 가진 것을 인정하는 뜻의 선언을 본조에 기초해서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선언을 행하지 않는 체약국에 관한 어떤 통보도 수리해서는 안된다.

2. 위원회는 본조에 기초한 통보로 의명의 것, 또는 통보 제출의 권리 남용이거나 이 조약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은 수리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3. 위원회는 다음의 것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으로부터의 어떠한 통보도 검토하지 않는다.

(a) 동일의 문제가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 절차하에서 심의되지 않는 것.

(b) 당해 개인이 이용할 수 모든 것의 국내적 구제조치를 다 한 것. 이것은 위원회가 구제조치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하고 있거나 또는 당해 개인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가져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본조 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해서 위원회는 본조에 의해 제출된 모든 통보에 대해서 본조 1항의 것으로 선언을 행하고 동시에 이 조약의 어느 한 규정을 침해한다고 주장되고 있는 체약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통보를 받은 체약국은 6개월이내에 문제를 명백히 하고 동시에 그 나라에 의해 취해진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밝히는 설명서 또는 성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5. 위원회는 개인 또는 그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 및 관계 체약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에 비추어서 본조에 의해 수리된 통보를 검토한다.

6. 위원회는 본조에 의한 통보를 검토할 때에는 합의를 비공개로 한다.

7. 위원회는 관계 체약국 및 개인에 그 각서를 송부한다.

8. 본조의 규정은 이 조약의 체약국 중 10개국이 1항의 규정에 기초한 선언을 행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선언은 체약국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것으로 하 고,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다른 체약국에 송부한다.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본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미 송부된 통보에 의한 어떠한 사안의 검토도 방해해서는 안된다. 사무총장이 선언의 철회 통지를 수령한 후는 당해 체약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않는 한 개인 또는 그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에 의한 어떠한 통보도 본조의 것으로 수리되지 않는다.

제78조 이 조약의 76조 규정은 이 조약이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 있어서,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관의 기본문서 또는 이들 기관에 의해 채택되는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 또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타수속을 방해하지 않고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또한 당사국간에 효력있는 국제 합의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수단에 호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8부 일반조항

제79조 이 조약은 체약국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입국을 인정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관한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체약국은 이 조약이 정하는 제한에 따를 의무가 있다.

제80조 이 조약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 및 이 조약이 다른 사항에 관련되어 각각이 지는 직책을 정하는 국제연합의 제기관 및 전문기관의 헌장 규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81조 1. 이 조약은 이하의 것에 의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의해 가입증의 권리와 자유가 인정되는 때에 그것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a) 체약국의 법률 또한 관습

(b) 체약국에서 효력을 갖는 이국간 또는 다국간 조약

2. 이 조약의 어떠한 부분도 그 어느 나라, 집단, 개인이, 조약이 정하는 권리와 자유를 해치는 행위를 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82조 이 조약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인정하는 권리를 폐기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를 포기시키고 혹은 인정하지 않은 채 방치시킬 목적으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압력을 가함은 어떤 형태의 것이라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계약에 의해 이 조약이 인정한 권리보장으로부터 일탈할 수 없다. 체약국은 이상의 원칙 존중이 확보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제83조 이 조약의 체약국은 이하의 조치를 취한다.

(a)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 내지 자유를 침해당했을 경우에 효과적인 구제가 행해지도록 확보할 것. 침해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졌을 때도 이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

(b) 이런 종류의 구제를 제기했을 경우, 권한있는 사법, 행정, 입법 기타 국내법이 정하는 권한있는 기관에서 주장을 심사하고 판단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확보하고, 사법심사의 기회를 확대할 것.

(c) 구제가 인정되었을 때에 당해 권한있는 기관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확보할 것.

제84조 체약국은 이 조약의 집행에 필요한 입법조치 기타 조치를 행한다.

제9부 최종 규정

제85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기탁자로서 지명된다.

제86조 1. 이 조약은 모든 나라에 의한 서명을 위해 개방해 놓는다. 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2. 이 조약은 모든 나라에 의한 가입을 위해서 개방해 놓는다.

3.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제87조 1. 이 조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익일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는 비준 또는 가입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당해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익일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88조 이 조약에 대해서 비준 또는 가입하는 나라는 조약의 그 어느 부의 적용을 피하거나 그 어떤 특별 형태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용을 피할 수 없다. 단, 이것에 의해 조약 3조의 적용은 방해받지 않는다.

제89조 1. 어느 체약국도 자국에 대해서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했을 때 국제연합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서면 통지에 의해 이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전항의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한 익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폐기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보다 이전에 발생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도 체약국은 이 조약에서 기초하는 의무로부터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폐기는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이전에 이미 위원회에 의해 검토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그 검토가 계속할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4. 체약국의 폐기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이후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당해 나라에 관한 어떠한 새로운 사안의 검토도 시작해서는 안된다.

제90조 1. 이 조약이 효력을 빌하고 나서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는 어느 체약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서면 통지에 의해 언제든지 이 조약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 개정 제안을 모든 체약국에 통지하고 체약국에 의한 개정안 심의 및 투표를 위한 회의 개최의 찬부를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 사무총장은 으로부터 통지가 있은 후 4개월이내에 체약국의 3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를 찬성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최 아래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있어서 출석하고 동시에 투표하는 체약국의 다수결에 의해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을 위해서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조약의 개정은 국제연합 총회에서 승인받고, 동시에 체약국 중 3분의 2이상의 나라에서 각각의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락됐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3. 개정이 효력을 발생했을 때에는 수락한 체약국은 그것에 구속된다. 수락하지 않은 체약국은 이 조약 및 그것 이전에 행해진 개정으로 자국이 수락한 것에 구속된다.

제91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서명, 비준, 가입을 할 때 행해진 유보의 서면을 수령하고 동시에 모든 나라에 송부한다.

2. 이 조약의 취지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유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통고에 의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사무총장은 그 철회를 모든 나라에 통고한다. 이 통고는 수령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92조 1. 이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국간의 분쟁에서 교섭에 의해 해결되 않는 것은 어느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중재에 부친다. 중재 요청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중재의 조직에 대해서 분쟁 당사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분쟁 당사국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분쟁을 위임할 수 있다.

2. 각 체약국은 이 조약의 서명 혹은 비준 또는 이 조약에 가입을 할 때 전항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다른 체약국은 그러한 선언을 행한 체약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향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3. 전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언을 행한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통고에 의해 언제든지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제93조 1. 이 조약은 아라비아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를 동등하게 정문(正文)으로 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인증본을 모든 나라에 대해 송부한다.

3-1. 세계 이주민 인권 조약의 중요성과 그 본질적 내용

본 협정(the Convention)의 중요성과 그 내용

A-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

본 협정이 외국인 노동자만을 위한 새로운 인권을 독점, 배제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본 협정의 제 3부 (Part 3)는, 세계 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담겨 있고 현재 많은 국가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여러 국제 인권 조약들(treaties)에 상세히 설명된, 기본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이것이 다시 반복되어야 하는가. 본 협정은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한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비인간화 된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한다. 사실, 다른 기본 인권 조약의 바탕이 되는 규정들은 몇몇 나라에서 '시민' 또는 '거주민' 등의 용어와 함께 쓰이는데, 이는 많은 이주자들, 특히 변칙적, 불법적 (irregular) 상황에 있는 이주자들을 배제하면서 이용되고 있다.

B- 기본적 자유권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이러한 근본적인 권리를 적용시키면서, 본 협정은 그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본국을 떠나고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제 1조). 본 협정은 '삶에의 권리' (Right to Life)(제 9조),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처벌행위에 대한 금지' 그리고 '노예제나 강제 노동에 대한 금지' 등을 재확인함으로써,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고 견뎌야만 하는 비인간적인 생활조건과 노동환경, 신체적인 혹사 (그리고 성적유린) 등을 포함해 다룬다 (cover,라는 단어 해석 불분명) (제 11조).

외국인 노동자들은 또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적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제 12조).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 또한 지닌다 (제 13조). 그들의 재산은 임의로 압수될 수 없다 (제 15조).

C- 정당한 법의 절차 (due process)

본 협정의 다음 조항들은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법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16조 - 20조). 조사, 구속, 구치 등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법 (법원과 법관) 앞에서 그 국가의 자국민들과 동등하다는 그들의 평등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들은 필요한 법률 전문가와 통역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정보나 자료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들이 법정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들이 외국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인간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외국 노동자들에 대한 부조리한 추방은 금지된다 (제 22조).

D- 사생활에 대한 권리

외국인 노동자는 자신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지니며, 이 권리에는 그 가족과 그들 모두의 의사 소통 영역에 걸쳐 해당된다.

E- 해당국가의 국민들과의 평등권

외국인 노동자들은 급료와 작업환경에 있어서 해당국가의 자국민들과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급료와 작업환경은: 초과작업시간, 노동시간, 주중휴무, 유급휴가, 안전, 건강 및 의료, 노동계약만료, 해당 직업을 위한 최소 연령 제한, 재택근무에 대한 규제 등을 포함한다.) (제 25조)

해당국가 국민들과의 평등권은 또한 사회 안전 혜택 (제 27조)과 응급진료혜택 (제 28조) 등에도 적용된다.

F- 급료에 대한 자국으로의 송금

고용주와의 계약을 끝마쳤을 때,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들의 개인 사유물, 소지품과 함께 그들의 급료와 저축금 등을 송금할 권리를 가진다.

G- 정보에 대한 권리

외국인 노동자들은 당시의 협정과 그들의 입국 허가 조건 등에 의해 규정된 권리에 관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이를 들을 권리가 있다. 이런 정보는 무료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야 한다 (제 33조).

H- 서류로 신원확인 되었거나 합법적 상황에 있는(documented)

외국인 노동자와 가족들의 기타 권리

본 협정은 합법적인 상태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기타 권리를 밝혀둠으로써 불법적인 노동력의 이주를 줄이고자 한다. 합법적으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향상되는 것은 외국 노동 시장에 합법적으로 뛰어들고자 하는 외국 노동자를 찾는 고용주를 고무할 것이다.

I- 일시적인, 또는 단기적인 견습에 대한 권리

외국인 노동자들은 집안 사정과 부득이한 경우에 (근무지에) 머물러 일하는 지시에 관계없이 일시적 혹은 단기적으로 결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J- 거주 이전의 자유

그들은 그들이 고용된 그 해당국가의 영토 내에서 자유로이 이주할 권리 를 가진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살기 원하는 곳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K- 교육, 직업, 사회 복지 제도 등에 대한 접근 가능에 있어서

해당국민과의 평등권

제 25조에 언급된 영역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 있어서 그가 고용된 해당국가의 자국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교육, 직업안내 및 취업알선 서비스, 직업훈련, 직업 재훈련, 주거관련 서비스 및 사회 주거관련 사업, 집세 등과 관련한 부당한 피해로부터의 보호, 사회복지 및 의료제도, 협동조합 내지는 자영업, - 이상의 영역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의 권리, 문화적인 삶을 위한 문화 활동에의 접근(access)과 참여에 있어서의 권리(제 43 조).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들 또한 이상에 열거된 영역에 있어서 해당국 자국민 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제 45조)

외국인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해고로부터의 보호, 실업에 따른 수당 내지는 혜택, 실업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 안된 공공 사업 등에 대한 접근 가능; 그리고 직장을 잃거나 기타 다른 보수 받는

일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다른 고용직으로의 이직 가능 (제 54호)

L- 고용 계약 위반

고용주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 노동자는 이를 고용당국의 해당관청에

항의 제기할 수 있다. (제 54조 (d)). 그리고 그들은 자국민의 경우와 동등하게 다뤄져야 할 권리와, 법이 정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 법관(tribunal)으로부터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들을 권리를 지닌다. (제 18조)

M- 불법 체류 노동자의 권리

본 협정은 '이주와 관련된 인간의 문제는 불법이주의 경우에 있어서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정, 확인한다. 본 협정은 또한 '비밀리에 행해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와 그들에 대한 불법 거래를 막고 없애는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한 합당한 행위를 장려할 필요를 인정한다. (협정 서문)

불법 혹은 비밀리에 행해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행위를 찾아내어 근절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런 이주를 조직, 조작하는 역할을 한 이들과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주들에 대해 국제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본 협정은 불법적인 노동력의 이주를 막고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련 국가들이 타국이나 관련국으로의 이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에 대항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제 68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undocumented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근본적인 권리 는 본 협정에 의해 보호받는다. (제 8~35 조)

N- 각국의 모든 정당들의 의무

다른 모든 국제조약과 마찬가지로, 본 협정의 성공적인 적용은 관련국가의 정치적인 의지에 달려있다.

3-2. [참고자료]

WCC 행동 강령(성명서)

우리는 교회들이 행동강령을 설립함에 있어 이를 보조키 위하여 "A MOMENT TO CHOOSE, RISKING TO BE WITH UPROOTED PEOPLE"(선택시기; uprooted people에게 있을 위험)이란 WCC(세계교회협의회)의 정책 성명서에서 나온 행동강령을 재차 반영합니다.

제안된 행동지침은 화이팅세시가 아니라 이는 교회가 나같이 참여함으로 포괄적이고 상호 퇴연한 행동지침을 제작하는데 있습니다.

행동 강령의 당위성에 대한 개개인 그리고 각 국의 종교단체 그리고 전 기독교 단체의 의지에 따라 각각 그들의 행동지침의 이행 순위가 주어지면서 본 강령은 uprooted people들이 자국이나 그들의 공동체를 떠나도록 강요하는 힘에 저항하며 대응하는 기미줄 같은 구조 안에서 이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접근 가운데 상호 연结성에 있어 그 진망과 현실성을 협의하는 것 이 바로 핵심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과 교회들이 강령을 이행할 것을 요망합니다.

행동지침의 이행은 이의 성패와 uprooted people에 대한 종교적 대응과 또한 이들의 격리(구금)의 원인을 심사숙고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경신(구제)란 격리(구금)에 대한 원인 그리고 uprooted people을 교회의 중심 생활로 유도하는 필요성으로 신학적 그리고 성서적 반영을 가져오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uprooted people에 대한 문제는 정책 수립, 결정위원회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는 핵심 단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에 연관되는 프로그램과 교회는 반드시 설립되고 또한 강조되어야 합니다.

본 임무는 전 그리스도교회적 일이며 세계적인 일입니다.

교회들은 다함께 노력하여야하며 시민단체 어느 부분과도 협력하여야 합니다. 많은 서로 다른 단체들이 uprooted people에 대하여 심도있게 서로 연대하여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적으로 팝박하는 제도적 구조에 대하여 한 단체만이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uprooted people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역시 정부와 같이 이 일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 또는 국제적인 정책 논쟁의 한 부분인 이 문제를 협의, 타결하는 과정에서 교회들이 어떻게 그들의 주장과 확신을 전달시킬 수 있는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명과 품위를 향상시키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WCC의 회원 교회로써 또한 연관된 전 세계 그리스도 교회의 단체로써 세계 안의 정의와 평화를 부흥시키며 uprooted people과 함께 동반하는데 전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그리고 교회들이 가질 수 있는 본 강령은 각 나라와 지역의 성격에 따라 다양화 될 것이며 교회들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하여금 서로 돋고 서로 같이 협조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이주민의 생명과 인격향상

우리는 회원교회들이 이주민에 관계되는 피난민, 그리고 국제적으로 격리(구금)된 사람과 이민자를 보호하고 그 권익을 향상시키도록 요구합니다.

A. 이주민에게 임시 안식처와 피난처 제공

- 피난민 정착을 위한 후원회 제공
-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성역 확장
- 범죄형성에 반대한 소녀 및 버려진 여성 보호 확보
- 이주민에 대한 보호에 제한을 두려는 정부 정책에 반대

B. 법적 빙어와 인권

- 망명이나 안식처를 요청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추구하는 가족이나 개인 보조
- 이주민이 만행의 위험에 처해 있는 피난민 camp, 공항, 국경들에서 옹호
- 관계되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보호를 제공하는 정부와 함께 협력
- 외국인에 대한 폭력 규탄을 위한 발표작업, 선언서 채택, 규탄 결의서 채택하기

C. 국제협약의 이행 촉진

- UN 협약 및 피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 합의서와 완전 이해과 그 비준 촉진
- 모든 이민 노무자와 그들의 가족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서의 이행과 그 비준 촉진
- 행정상으로 아동에 관한 권리와 버려진 어린이에 대한 옹호관련 국제협약서 사용
- 국제적으로 격리(구금)되었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귀국할 수 없는 사람 등 이주민을 위한 보호를 제공할 국가나 국제적 구조 기능을 발전시킬 연대 노력에 참여함

2. 정의와 평화를 위한 임무들

우리는 교회들이 강제격리(구금)된 이들이 원인을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기를 요청합니다.

A. 축출시키려는 정치.경제.사회 및 환경적 사유를 연구

- 축출된 사유와 귀국하려는 희망에 대하여 이주민의 진술을 듣고 이해하기
- 축출의 구실(분위기)를 조성하는 국가의 역할을 감시
- 축출 사유를 규명할 수 있는 교회들의 능력평가

B. 평화적이고 투쟁적인 결의로써 대처

- 교회 내에서 평화와 총체적인 책임에 대하여 교육 실시
- 투쟁 결의 시, 인도적인 구제로 안전한 사회적 공간을 창출하려는 중재, 협상전문가와 협조하여 수행
- 평화의 공동체 구성
- 단체, 조직, 인권활동에 있는 상호조합조직, 경제정의, 민족적 정의, 평화등의 단체 성격에 바탕을 둔 공동체와 연합체 구성

- 그들을 머무르게 하거나 귀국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같이 이런 문제를 방지하며 해결하는 특히 UN을 통한 책임있는 국제 활동을 옹호

C. 경제 및 사회적 완전한 생활을 위한 활동

- 경제적 자급자족을 위한 지역 내 대안에 대한 지원
- 생동력 있는 공동체 건설의 일부분으로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와 이에 동반되는 권리를 장려
- 격리(구금)의 환경적인 사유에 역점을 두는 방법을 고려하는 법적 전문가 등의 관련 그룹과의 대화 확립

D. 그들의 고향 땅에서 안전하고 품위있게 머무를 인간의 권리에 대한 장려

- 그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보조와 추가 지원정책 같은 교류를 촉진
- 잔유하든지 혹은 그들의 지역으로 가든지 토착민 또는 식민지 사람의 선택적 권리 옹호

3. 이주민 공동체 만들기

우리는 교회들이 헌신적인 봉사와 차별 없는 지원과 연대성으로 이주민들과 같이 동반하기를 요망합니다.

A. 이주민이 잔유하든지 떠나서나 다시 돌아가는 결정에 함께 참여

- 잔유하거나 그들의 지역을 떠나든지 선택할 사람에게 현실성을 유지하도록 함
-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안전성과 공동체에 재결합되는 것을 감시하며 옹호, 이주민이 그들의 본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과정을 보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B. 물질적.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 필요성에 대답해 줄 봉사를 제공

- 이주민이 계획하고, 이행하고 또한 프로그램, 봉사, 전 그리스도교적 창의성의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성 확보
- 개개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위기 해소 봉사와 목회자 영적 치료 제공
- 무연고 부녀자에게 특별히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장려하며 공동

체에 참여를 강조

- 그 가족과 분리된 어린이들이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향유할 수 있도록 옹호.
- 무연고 어린이에 대한 교육 발전과 정신적 감성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핵심적인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촉진
- 국제이민 기구이며 물자원조와 이주민 인권향상 기구인 UN 고등 판무관 옹호

C. 이주민들의 솔선을 지원함

- 이주민들이 독립할 수 있게끔 공동체 개발 기회를 제공
- 이주민들이 결정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과 문제를 대응할 개인이나 조직을 강화시킴
- 이주민들의 공동체와 조직과 연합체 설립

D. 무연고 기독교인과 “함께”같이 함

- 무연고 기독교인들이 교회생활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환영하고 고무시킬 필요한 단계를 취할 것
- 기독교인의 전통의 다양성을 포용할 것
- 무연고 기독교인들의 집회를 재구성할 이들의 공동체를 원활하도록 지원함
- 이주민들과 솔선수범하는 것을 개발하면서 다른 교회들과 함께 일함
- 이주민들의 영적 선물을 받을 것

E. 다양한 삶의 영유

- 선입견과 공포 그리고 미신을 해소하기 위한 절대한 자와 이주민와의 대면하는 집회를 소집하고 참석함
- 인종차별, 외국인 기피증 그리고 이주민들에 대한 적대행위를 반대하기 위한 캠페인을 구성하라.
- 각 인종 중 이들을 선별하여 교회의 국제 인적 교류를 추진하라.

F. 공적 연대성 회복

- 교회,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국가에서 피난민의 날 혹은 “이민자의 주간” 설립을 추진하라
- 봉사나 기도가 가능한 곳으로 할 수 있으면 상호 신앙대회를 가져라
- 온전한 생활을 위한 교회의 이주민들에 대한 활동을 만들 교육과 인식을 개발

하라

- 희망의 징표들(징조)

비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돌아서거나 혹 그들 중 한 가운데 이방인을 무시하지만, 어떤 기독교인과 교회들은 이주민 편에 있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자신들이 수 세기동안 이방인이고 망명자 신분과 같다고 하였다.

희망의 징표는 세계를 통하여 새로운 목회자를 배출하여 전 그리스도 교회의 협조의 전달 수단을 그리고 인간의 품위 및 공동체를 유지할 교회의 솔선수법과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 수많은 위험 부담 안에서도 크리스챤과 교회들은 이주민 편에 서 있다.
- 많은 크리스챤과 교회들은 이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불복종 활동을 함으로써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 많은 교회와 공동체 단체들은 그들의 생명과 안전에 있어 강요된 귀국이나 만행 때문에 위험에 놓여 있는 이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기를 찾고 있다
- 어떤 교회는 그들 자신 회원들 가운데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 기피현상과 감히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 무연고 부녀자 및 남성의 생존 전략은 그들의 처지에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 저항하는 능력과 그들의 관심사에 역점을 둔 자기자신을 결집시키는 것으로 지적된다.
-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그리고 교리, 기초조직, 이웃 단체와 그 가족들은 생명의 가치 선상에서 대안적 삶의 방법을 이루고자 분투 중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주민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을 위한 교회로써 그들의 존재를 재인정 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의 가능한 모든 수준에서 봉사와 중임을 통하여 회원 교회들이 실천할 수 있기를 요망합니다.

4. 인간 존엄의 길을 향하여

개요

“
이주민과 함께 할 선택의 순간입니다.
This is the moment to choose to be with uprooted
people.”

이 안내서는 이주자들 자신을 포함하여 이주자의 기본적 인권을 기꺼이 대변하고 고양시키고자(uphold) 하는 사람들에게 배경 지식과 기본교육(orientation)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이주자의 생명과 위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국제 인권 기준이 각 나라별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지역과 국가 차원의 활동과 캠페인을 펼치려는 사람들을 돋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국제 이주민 권리 감시 위원회(The International Migrants Rights Watch Committee)는 국제적인 기준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국제규약으로 발전(promote)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 안내서는 1990년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규약을 논의의 중심으로 하고 읽는 사람들에게 이 규약의 내용을 이해시키고 그것의 비준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책자가 그 규약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캠페인의 지역차원에서의 도구와 행동지침이 되길 바란다.

이 안내서는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서는 이주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국제적 이주를 가져오거나 그것이 일어날수 밖에 없는 지구적 흐름에 대해 요약과 국제 이주민들의 신상과 지역에 대한 통계의 개괄, 그들이 처한 상황의 악화에 대한 강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주민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1990년 규약을 중심으로 한 캠페인의 핵심적인 특징들이 개괄적으로 소개될 것이다.

둘째 영역에서는 국제적 인권 기준들이 무엇이며 그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가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 규약들의 비준이 어떻게 작용하며 국제적 기준들이 어떻게 국내법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과정 설명이 있게 된다.

셋째 영역에서는 1990년 규약의 내용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 규약에 명시된 이주 노동자 송출국과 경유국 그리고 수입국의 의무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과 그들 가족들의 세부적 권리에 대한 개괄이 이루어진다.

넷째 영역은 이 규약의 비준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이다. 이 부분은 그 규약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활동과 비준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의 조직 단계들을 제시한다. 그 속에서 인권단체와 이주민 공동체들뿐만 아니라 여성 단체, 노동조합, 종교 부문을 포함한 다른 영역들 간의 연대를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국회와 다른 정부조직에 접근하고 로비 하는 방법들도 소개된다. 또한 국제 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별 보고서에 영향을 주는 방법과 각종 지역과 지구적 차원의 회의와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방법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다.

제1부

이주자의 권리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캠페인의 필요성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기본적 인권과 인간적 존엄의 침해는 이제 전 지구적 문제 가 되었다. 이주자에 대한 폭력은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주민들, 난민들,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에 대한 외국인 혐오적 표현과 인종차별적인 감정들은 대부분의 서구 산업국가 들에서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해 연안, 동유럽과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도 주요한 정치적이고 공공적인 담론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많은 나라에서 이주민들이 실업률의 증가, 범죄, 그리고 일련의 다른 사회적 병폐에 대한 거의 보편적으로 희생양이 되어버린 것이다.

주요 호흡

이주는 인간 역사의 변하지 않는 특징이다. 대규모의 지구적 인구의 이동을 몇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 특징들은 지구적 차원의 양적인 인간 이주의 새로운 현실로 이끌고 있다.

1. 과거에 사람들이 전통적인 공동체와 국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했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상황들이 붕괴되고 있다.
2.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들은 국가간에 일어나기보다는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치적 지도자들은 종교와 인종을 이용하여 좁은 민족적 목표를 내세워 다원적 사회를 통합시키기보다는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3. 난민들의 이동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주 호흡과 한 국가내의 이동(displacement)은 엄청난 수의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보조할 지원을 가장 적게 가진

남쪽(South)지역 국가들 내에서 그리고 그 국가들을 향하여 일어나고 있다.

4. 이주는 세계적인 경제침체 기간동안 지구촌 전지역간에 확장되고 있다.
5. 난민들과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적이고 외국인 혐오증적인 적대는 늘어간다. 가끔 노골적인 폭력으로 표출되기도 하는 이 적대감은 지구촌 전역에 퍼져있다.
6. 선진화된 북쪽(North)지역 국가들이 주도하여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는 제한적인 이민 통제와 자국 영토로 혹은 각국 영토들 간의 이주 흐름에 대한 억제 정책을 가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들은 국제적인 이주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 조율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강제된 이주의 범위

유엔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1억 2천명 이상이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적 이주와 관련한 국가들의 통계는 안타깝게도 드물어서 적절한 절차 없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타내지 못하거나 한다고 해도 정확한 통계는 되지 못한다. 국제적 이주의 수량에 관한 가장 설득력 있는 통계는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16-20,000,000
아시아	6-9,000,000
유럽 (구 소련과 전 유고연방은 제외)	20,000,000
북아메리카	15-17,000,000
남/중앙 아메리카	7-12,000,000
서아시아 (아랍 국가들)	6-7,000,000
총계	70-85,000,000

1998년 초를 기점으로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UNHCR)은 1억 3천만명의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ILO와 UNHCR이 언급한 수치들은 다른 국외 거주자를 나타내는 범주들과 함께 세계 인구 50명 중 거의 한 명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여성은 모든 이주민의 거의 반을 차지한다.

국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정확한 이주민의 법적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 국제적 이주민의 범주는 매우 꽤 넓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이야기되고 있는 정의

는 다른 나라에 거주하거나 일하기 위해 국경을 건너고 다른 나라에 영구적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 이주 노동자들과 다른 이주자들 사이의 구분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주의 농기들

몇몇 주요 국제기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난민으로 인정된 범위를 넘어선 오늘날이 국제적인 이주자들의 대다수가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들 때문에 그들의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나라고 보고 있다. 1995년에 세계교회협의회(The World Council of Churches)는 이러한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의해 그들의 보금자리와 문화를 둑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외부에 의해 붙여진 명칭에 관계없이 고향 떠난 사람들(uprooted people)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오늘날 국경을 건너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난 갈 곳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다. 1994년 가이로에서 열린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는 그 최종보고서의 국제적 이주에 관한 장에서 사람들이 국경을 건널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강조하였다. 국제 경제 불균형, 빈곤, 평화와 안전의 부재와 혼합된 환경파괴, 인권침해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법률적, 민주적 제도의 발달은 국제적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이 중 상당한 경우가 다른 이유들로 인해 발생한다. 경제적 활동의 세계화는 노동시장의 국제화를 가져왔고 외국의 환경에서 국제 경험과 적응훈련은 마케팅, 호텔서비스, 통신과 같은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전문 직업인에게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 내에서 인적자원의 교환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많은 국가들은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새로운 생산과 서비스분야를 개척하고 노동 집약적 산업을 지속시키기 위해 이주노동자와 전문 직업인에 의존하고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러한 이주노동력이 국내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이주노동자와 전문 직업인들 중 많은 수가 다른 나라로 이주하도록 고무되고 모집되기까지 한다. 최근 아시아 전역에 걸친 금융위기는 다시 한번 이러한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보호받기 힘든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기피되는 3D(dirty, dangerous, difficult)업종에 종사하도록 수만 명에 의해 모집된다. 그러나 경제침체나 변화의 시기에는 추방과 더욱 심한 학대에 처하게 된다.

어떤 인간도 "불법적"이지 않다.

이주자들은 일련의 사회 문제들에 대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년간 각국 정부들과 국제회의 등에서 널리 쓰인 "불법 이주자"라는 공식 용어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이 단순한 용어는 이주자들을 반사회적인 "상품"으로 만들면서 범죄인화시키고 인간이하로 만들어버린다. 오늘날 많은 이주자들은 기록되지 않고 지위를 갖지 않거나 규제를 받지 않는(irregular) 상태이다. 그들은 합법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수입국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한 이주정책의 제한을 수용할 책임이 있다. 국가들은 지위에 상관없이 그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한 사회 내 어떤 집단 특히 가장 약자집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이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보여준 것처럼 란 집단의 권리에 대한 부정은 다른 집단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첫 번째 단계이자 기반이 된다.

보호의 부재

전 세계적으로 131개 국가에서 비준하여 폭넓게 수용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UN협약 (그리고 1967년 의정서)은 박해를 당할 수 있는 나라에는 누구나 되돌아가지 않을 권리(非歸屬權)를 지니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는 non-refoulement의 권리라고 언급되는 것이다. 이 협약은 개개인으로서 난민은 다양한 근거로 박해에 처하는 데 대한 심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 협약을 비준한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난민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에 대한 보호수단과 다른 보조수단을 보장하였다. 또한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수한 측면들을 관할하는 아프리카 연대기구(The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의 1969년 협약을 비준하였는데 여기서 난민의 정의는 외부의 공격이나 직업, 외국에 의한 점령, 혹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혼란시키는 사건들 때문에 자기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확장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광대한 규정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되는 국제법의 일부가 아니다. 전쟁을 피해 피난을 가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난민지위를 요청하는 나라의 국내법상으로는 다른 지위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환경적이고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 고통으로 인해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놓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만 특정적으로 지지하는 국제적 규범은 없다. 그처럼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이 처한,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인 유형의 기준을 설정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가 난민들을 그러한 생명에 위협적인 상황으로 강제로 돌려보내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난민 협약은 난민들이 자기 의지에 반해 추방당하지 않을 것을 주장할 뿐이다; 각 국가에

망명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망명을 허용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이 안내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이주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호를 보장하는 예외적인 노력과 그에 관한 협약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1970년대에 이르러 형성되었다. 이 기본적 인권들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 보호에 관한 1990년 국제 협약[을 입안하면서 규정되었다. 이 문서는 다시 유엔 인권선언과 같은 중요한 문서에 들어있는 원칙들에 기반하고 있다. 이 협약이 뚜렷하게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의 비준과 그 안의 규정들을 이행하는 것은 약자의 위치에 있는 다른 대부분의 이주자들에게도 상당한 보호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하거나 가입하고 그것을 국내법안에 수용함으로써 국제적 인권규범 들을 채택하는 필 요한 단계를 밟은 나라는 거의 없다. 인권옹호자들과 법치주의를 민주사회의 근간으로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권리의 보호가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점점 증가하는 이주민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와 함께 국제 이주민 권리 감시 위원회(International Migrants Rights Watch Committee)가 이 협약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적 캠페인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협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즉 국제법의 일부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개국이 그것을 비준하거나 그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 협약은 훌륭한 실천의 권위 있는 기준으로서 쓰일 것이고 그것을 준수하겠다고 동의하지 않은 비상 시국에도 강한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

협약 캠페인

각국 정부들이 이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게 해야 한다. 이것은 국내적, 국제적으로 정부관료나 정치가들 대중들에게 폭넓은 인식을 심어주고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이 캠페인은 많은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그것에 가입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되고 연관된 활동을 펼치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은 것이다. 이 협약에 대한 광범위한 비준을 이끌어내는 것은 정부대표, 정부 간 기구, 국내,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기구들, 기금과 자치기구들 간의 협조에 의한 캠페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공식적인 캠페인 촉진 위원회가 캠페인 전략과 자료들을 만들기 위해 소집되었다. 비준을 위한 캠페인은 정치적 옹호와 인식 고양의 요소를 수반한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모두 공무원 정당, 노동조합, 종교단체, 인권단체, 이주자 그룹, 여성기구와 같은 사회 내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지지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부

국제적 기준: 국제적 기준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민족이 적용되는가

인권의 핵심적인 함의는 경제적, 정치적, 인종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조건하의 모든 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합당한 원칙들이 존재한다는 무언의 주장이다. 더 나아가 인권은 이러한 원칙들이 우리들의 공통된 인간성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 인식은 각 개인과 모든 사회 체 그리고 특히 국가에 대하여 모든 인간에게 이러한 원칙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을 부과한다.

이 인식은 개인의 권리와 사회간의 근본적인 관계를 인정한다. 유엔 인권선언의 서두에서처럼 "...인류 모든 성원의 타고난 존엄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인식은 세계의 자유, 정의 그리고 평화의 근간이다."

인권의 기준들은 각종 선언과 포고령(proclamation), 협약과 규약들에 나타나 있다. 선언과 포고령들은 인권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성명들이다. 보편적이고도 특정한 인권에 대한 중요한 성명들은 UN 일반총회와 정부간 국제회의, 그리고 지역 기구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러한 문서들은 규범적이지만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반면에 협약과 규약은 그러한 문서들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나라들에 구속력을 갖는 기준들을 열거한 규범적인 문서들이다.

이러한 모든 종류의 조약들은 보통 인권"문서"로 언급된다. 이러한 문서들은 국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인 원칙들을 진술한 것이다. 그것들은 국가들이 따라야 하는 기본적인 기준들이다. 국가들은 각각의 사법권 하에서 인권을 규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부가적인 법률과 절차들로 이러한 기본적 인권기준을 국내법안으로 수용하는 것을 보충할 수 있다.

인권 기준의 의사

가장 기본적인 문서는 UN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만들어진 UN인권선언이 다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년에 채택된) 이 선언은 인권을 국제법의 기본요소로서 확보하였다. 그것은 19세기에 시작된 국가관의 관계에 대한 공통규칙을 수립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수십 년에 걸쳐 발전된 인권규범 들을 담고 있다. 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들을 수립하려는 과정은 2차 세계대전의 공포를 겪은 후에 가속화되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인권 기준들은 끊임없는 확대되고 팽창되었다. 자결의 권리, 차별의 방지, 전쟁 범죄와 인류에 대한 범죄, 노예와 강

체노동, 수감자에 대한 대우와 고문의 방지, 국적과 난민의 지위, 정보의 자유, 여성의 권리, 어린이와 다른 특정 집단들 그리고 사회복지 등 다양한 종류의 특정 소재를 포함하는 조약들이 쓰여졌다. 현재 인권에 관한 국제 조약만 해도 80여가지가 넘는다.

정치적, 시민적 권리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광범위한 정의를 포함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규약이 1960년대 중반에 채택되었다. 그것들은 UN인권선언과 함께 "인권에 관한 국제 헌장(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으로 언급된다.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인권에 관한 세계회의(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Rights)는 인권보호에 관한 확대와 팽창과 확대의 시기를 절정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상 세계 모든 정부의 대표자들에 의해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The Vienna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은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다양한 문서들에 열거된 권리들이 모든 이에게 어디서나 적용되고 정치적, 시민적 권리는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와 분리될 수 없음을 단언하였다.

이 회의는 일곱 개의 주요 인권문서를 그것들의 비준과 수행이 보편적이어야 하는 기본적인 조약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위에 언급된 두개의 규약과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의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과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비하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어린이들의 권리에 관한 협약 그리고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의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이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기준들은 관련 국내법과 사법권의 창출의 기반으로 쓰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 국가가 어떤 조약을 비준하거나 그것에 가입하는 것은 자국의 국내법을 조약에 설정된 법적 기준들을 따르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표현이다.

국제적 기준들이 밝혀지는 과정

조약들과 다른 기준들은 대개 일개 혹은 대개는 좀더 많은 몇몇 관련 국가들이 UN연관 포럼에서 기준을 입안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생겨나게 된다. 많은 조약들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선언된 권리들로부터 생겨났다; 몇몇 조약들의 유엔 총회에서 직접 만들어졌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경제 사회 협의회(ECOSOC)의 주요 부속기구로서 많은 UN가

입국들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네바에서 열리는 6주간의 회기는 정부들과 전세계적으로 인권침해에 관련된 비정부기구들로부터 관심사를 청취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UN에 권고를 준비하기 위한 포럼 장으로서 기능 한다.

UN총회는 UN의 핵심 심의, 정책수립 기구이다. 모든 가입국가는 의견을 낼 수 있고 투표권을 지니다. UN총회는 거의 두 달에 걸쳐 계속되는 회기를 뉴욕에서 갖는다. 이러한 UN포럼에서 관계국가들의 발의는 많은 경우 현존하는 규범들이 아무런 적합한 보호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권리들의 특정형태의 악용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비정부기구체에 의해 자극되었다.

물론 몇몇 국가들은 특정 인권 규범들을 촉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인 적대국가의 행위나 상태들을 비판하는 편리한 정치적 도구라는 것을 알았다. 냉전기간동안에 인권을 둘러싼 논쟁들은 국제적 담론과 선진의 주요한 특징이었다. 예를 들면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강력하게 정치적 시민적 권리들을 촉진시키면서 사회주의와 전체주의 체제들을 그러한 권리로 누구르거나 부인하다고 하여 비난하였다. 이에 반하여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들을 지지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권리에 대한 관심의 부족과 식민지나 그 위성국가 들에서 그러한 권리들이 부정되는 것을 이유로 들어 서구 국가들을 비난하였다. 이러한 편향된 관심조차도 과거에는 인권에 대한 인식과 문제에 광범위한 주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인권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였다.

일단 발기자들의 새로운 조약의 수립에 대한 유엔 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정부간 활동그룹이나 입안그룹이 임명된다. 이러한 그룹들은 정상적으로 모든 지역국가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그것들은 대개 새로운 규범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대표들이 이끌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규범에 반대하거나 중대한 유보를 가지고 지지하는 국가들도 종종 입안 위원회에 의석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는 어떠한 초안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든지 간에 그것이 너무 급진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때로는 단순히 입안그룹이 합의를 얻어 채택될 수 있는 초안을 늦어지게 하거나 막기 위함일 때도 있다.

어떤 조약들은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주자의 권리에 관한 1990년 협약은 1980년에 활동그룹이 설치된 이후 협상과 작업에 10년이 걸렸다.

입안 그룹들은 일반적으로 현존하는 규범들을 연구하여 관련성 있고 비교 가능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온다. 그들은 또한 그 분야에 능력을 갖추고 있는